

CHOSUN  
UNIVERSITY  
1946

[UCI]I804:24011-200000237790

2009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중국 경제 • 무역 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손 지 군

CHOSUN  
UNIVERSITY  
1946



조선대학교  
CHOSUN U

중국 경제 • 무역 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Economic and  
trade Policy in China

2009 년 2 월 25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손지군

CHOSUN  
UNIVERSITY  
1946



조선대  
CHOSUN U

중국 경제 • 무역 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김 명 호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 년 10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손 지 군

손지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서갑성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분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명호 (인)

2008 년 11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	3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구성 .....	2
제2장 개혁개방 이전 시기의 경제·무역 정책 .....	4
제1절 대내 경제 발전 계획 .....	4
제2절 대외 무역 발전 상황 .....	5
제3절 외자 도입 정책 .....	9
제4절 개혁·개방 이전 시기의 환율제도 .....	12
제3장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무역 정책 .....	14
제1절 대내 경제 발전 계획 .....	14
제2절 대외 무역 발전 상황 .....	26
제3절 무역관리체제의 변화 .....	28
제4절 외자도입 및 유치정책 .....	39
제5절 개혁개방 이후의 환율제도 변화 .....	47
제4장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이후의 경제·무역 정책 .....	50
제1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	50
제2절 WTO 가입 이후 대내 경제 발전 계획 .....	56
제3절 대외무역 발전 상황 .....	61
제4절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	63
제5절 WTO 가입 이후 외자도입 .....	72
제6절 WTO 가입후 환율제도 변화 .....	76
제7절 FTA 추진 상황 .....	78

제5장 결론 .....	82
참고문헌 .....	85

<표 목차>

<표 2-1> 각개 발전 시기 무역 평균의 성장속도의 대비 .....	7
<표 2-2> 중국대외무역의존도의 변화 .....	8
<표 3-1> 중국 대외무역기업의 경영메커니즘 전환방향 .....	38
<표 4-1> 중국의 WTO 가입 주요일지 .....	50
<표 4-2>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과 중국의 약속 .....	54
<표 4-3> 11차 5개년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주요 내용 .....	57
<표 4-4> 중국서부지역의 3단계발전 전략 .....	59



## ABSTRACT

Sun Zhijun

Advisor : Prof. Kim, Myung-ho Ph.D.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hinese Communist Party, after 8-year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and 3-year civil war with the Guomintang under the leadership of Mao Zedong, finally establish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October 1, 1949. After new China was founded, as the West's economic blockade of China, China can only obtain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But at the end of the 1950s, because of the deterioration of Sino-Soviet relations, the Chinese government carried out the policy of self-reliance by Mao Zedong. From the beginning of 1953, the Chinese government constituted an economic plan every 5 year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each five-year economic plan, the central government continued to improve trade policy and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t different stages. 70s, with China at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the restoration of th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countries and the gradual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has improved. In 1970s, with the restoration of China's status at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the gradual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countries,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has improved, in 1978, under the advocacy of Deng Xiaoping, Chinese Government began to reform and carried out the policy of opening up to the world. First of all, the rural people's commune was abandoned and the production of contract responsibility system was implemented, and then the city's financial and business management reform was proceeded. First of all, to attract investments, the special economic zones were

established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were set up in 14 coastal cities. In the 1990s, further reform and a comprehensive policy of opening up to the world were implemented, such as the Pudong New Area of the Yangtze River Delta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nternational city of Zhangjiagang, as well as the promotion of land-locked border trade, etc. However, at that time, the trade policy and management system seriously impeded the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Therefore, the Chinese government, first of all, decentralized the right of foreign trade management, and followed by trade operating profit and loss accountability. Government converted the Foreign Trade organizations, in particular, in 1994 the 8th National People's Congress passed the "Foreign Trad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mally come into effect on July 1, 1994). "Foreign Trade Law", further strengthened transparency and uniformity of China's trad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jo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China negotiated with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inally in November 2001 formally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fter joining the WTO, China's economic and trade must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practice, China's economy depended on international markets more and more, therefore, the Chinese government, in 2004, promulgated a new "Foreign Trade Law".

Some drastic changes about the right of foreign trade management and import and export management system have been made. After joining the WTO, the Chinese Government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ultinational FTA consultations. China now has signed a FTA with 29 countries in Asia, South America, Australia, Africa and Europe. In order to open up export markets and important energy market, to keep China's economy maintaining rapid growth, the Chinese government would take a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FTA negotiations.

The use of foreign investment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trade policy in China. In the early period of nation-building, China mainly accepted the former Soviet Union's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international loans. After



the reform and opening-up, with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opening-up of coastal areas, with the implementation of preferential policies for foreign investment and the investment ways of foreign-funded enterprises, and with the continuing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with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enterprises products in international markets, China has improved the Exports increase. And to coordinate the development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China's exchange rate system has reformed twice. Since 1981,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using both fixed exchange rate system, however,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foreign trade and the continuing increase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the Chinese government, since January 1, 1994, has been implementing the new single system of the management of exchange rate. After joining WTO, China's trade surplus t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s surges,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also increased rapidly. Thus trade friction arose. To solve this problem, since 2005, the Chinese government took a gradual appreciation of RMB policy, at the same time, the RMB exchange rate no longer simply pegged to the U.S. dollar, but in accordance with China's foreign trade development, chose a number of major currencies, given the appropriate weight to form a basket of currencies. I believe in the future, the Chinese Government's reform in the exchange rate will be more in line with international economic changes, so as to better promote the development of China's trade.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49년 10월 1일에 8년간의 항일전쟁과 3년간의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주도권을 둘러싼 내전을 겪은 후 중화인민공화국이란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건국 초기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서방세계는 중국에 대해 경제봉쇄와 금수정책(禁輸政策)을 실시하였고, 따라서 중국은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주로 구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 말기에 소련과 이념분쟁을 벌이면서 중국은 대외정책에 있어 독자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중국은 마오쩌둥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간다는 이른바 자력갱생(自力更生)을 선포하였다. 그것은 곧 철저한 대외 폐쇄적인 경제정책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마오쩌둥이 돌아가신 뒤 2년이 조금 지난 1978년 말부터 덩소평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대외개방정책으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일원으로 편입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9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렇게 된 주된 요인은 개방보다 개혁 부진에 있었다고 여긴다. 국유기업, 행정·금융 부문에서 개혁이 지체됨으로써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감소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했다. 1990년대 말 이후 수출과 고정 자산 투자 증가에 힘입어 중국 경제는 다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WTO각료 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됨으로써 같은 해 12월 11일자로 중국은 WTO 정식 회원이 되었다. 이는 중국 대외 경제 발전 길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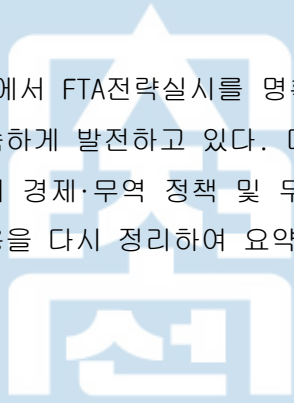
이제 세계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부른다. 한국과 일본의 5%에 불과한 인건비와 높은 기술 잠재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Made in China” 제품은 세계시장을 지배하면서 2003년에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을 석권하였다. 2001년 일본 <<통상백서>>는 “중국이 일본 대신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썼지만,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기관들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중국의 국민소득 수준이 이미 일본을 능가

했다고 본다. 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중국은 유일하게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3년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국은 “세계경제의 희망”으로까지 일컬어졌다. 세계가 중국경제를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공식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의 배후에는 중국 정부의 경제·무역 정책이 있다. 그 정책은 단계적 지역개방정책과 무역체제개혁에서 출발하였다. 지역개방 정책은 해외 자본과 기술의 도입정책과 연계되었다. 정책의 효과로 산업기반이 확충되고 수출경쟁력도 강화되었다. 외국 자본과 기술의 도입 및 무역의 확대는 중국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더욱 높였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무역 정책은 중국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에서 중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중국의 경제·무역 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기별로 중국의 경제·무역 정책을 살펴보며 정책 변화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중국경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중국 경제·무역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업무에 도움이 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제 2 절 연구 구성

본 논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한 후로부터 개혁개방 및 WTO 가입을 걸쳐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무역정책 및 무역관리제도의 변화를 연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한 후에 서방자본주의 국가들이 대 중국의 경제봉쇄로 인해 중국정부는 자력갱생과 계획경제체제를 택했고 60년대까지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주로 구소련에 의존했다. 따라서 논문 제2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초기부터 개혁·개방 이전의 경제·무역 정책을 살펴본다. 70년대 말에 국제경제 환경의 호전에 따라 중국정부는 등소평이 주도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실시하였고 대내 농촌생산책임제와 도시 기업관리체제의 분권화, 대외 경제특구의 설립과 외자유치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쟁쟁한 시기에 연해지역 전면 개혁·개방을 한층 더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논문 제3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WTO 가입 이전의 경제 무역 정책 및 무역관리제도를 살펴본다. WTO 가입 후에 중국의 경제와 무역은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2004년에 개정된 신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 관리 제도를 많이 개선하였다. 중국정부는 제 17차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FTA전략실시를 명확히 거론하였다. 지금 지역경제협조를 통해서 중국경제는 지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논문 제4장에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의 경제·무역 정책 및 무역관리제도를 살펴본다. 논문 제5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

## 제 2 장 개혁개방 이전 시기의 경제·무역 정책

### 제 1 절 대내 경제 발전 계획

중국은 8년에 걸친 항일전쟁과 뒤이어 치르게 되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주도권을 둘러싼 내전을 겪고 난 후 1949년에 마오쩌둥의 주도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오랜 전쟁 끝이라 국가가 수립되었지만 피폐한 산업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중국은 모든 국력을 전쟁으로부터 산업 부흥에 쏟아 붓는다. 시기별로 중국 개혁·개방 이전의 경제 무역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제부흥기(1949-1952년)

이 시기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 발전의 조건을 형성한 기간으로서 “국가재정경제공작통일정책결정”이 시행되었다(1950년 3월) 이 시기에 경제건설에 매진한 결과, 중국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안정·생산개시 등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가 확립되고 토지개혁이 완성(1950년 10월까지 전국적으로 90%가 완수)됨으로서, 이후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이 기간의 연 평균 GNP 성장률은 19.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제 1차 5개년 계획(1953-1957년)

제1차 5개년 계획은 구소련의 경험을 모방한 것이다. 즉 스탈린식 불균형 발전전략이다. 희소한 자원을 국가가 한 손에 장악하고 그 것을 일정한 곳으로 집중시켜 사용함으로써 공업화를 단기간에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농업, 수공업의 개조 및 사영상공업의 개조 조치도 뒤따랐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된 결과로 총 투자액 550억 인민폐 중 중공업에 45.5%가 투자되었다.

### 3. 제 2차 5개년 계획(1958-1962년)

중국은 이 시기에 농업과 공업, 중공업과 경공업, 중앙과 지방을 병행 발전시키는 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정부가 경제의 기술적 개조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초기에는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운수업, 상업도 경제발전에 상응하게 하였다. 集體的, 전민의 소유의 확대, 과학연구의 강화, 국방력의 강화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인민공사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대약진운동, 인민공사 제도의 불합리성과 3년간의 자연재해로 인하홍작(1959-1961년) 소련 기술자의 철수(60년 7월)등의 원인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4. 제 3차 4차 5개년 계획(문화 대혁명기:1966-1975년)

문화대혁명은 일대 바람이 중국전역을 휩쓸면서 정치, 사회적인 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측면에서도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의 원칙이 천명되었다. 이 시기에는 총 노선정책을 견지하면서 농공진흥정책을 배합하여, 서유럽으로부터의 플랜트 수입을 재개(1972-1975년간 28억\$)하였고 근로의식 개혁운동 또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건설을 위한 국내환경이 점차 호전되었다.

## 제 2 절 대외 무역 발전 상황

50년대에는 유엔 禁運조치로 서방자본주의 대국들과의 교역이 단절되어 소련와의 교역이 성행하였다. 이 시기의 대외무역은 불리한 대외무역환경과 정부의 강력한 무역통제정책의 시행으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다. 60년대에는 중소관계의 악화됐거나 1966년 문화대혁명이 발생하여 대외무역발전은 저해됐다. 70년대에는 유엔지위를 회복하면서 서방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중미관계가 회복되어 서방국가와의 무역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다<sup>1)</sup>. 그 중에서 일본과의 교역이 신속히 증가하여 중국 제일의 무역파트너가 되었으며 홍콩과 마카오가 그 뒤를 이었다<sup>2)</sup>. 그래서 1950년 11.3억

달러에 불과하던 무역액이 1975년에는 147.5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이시기의 무역 수지가 대부분 적자이지만 5억 달러 미만의 작은 수치인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균형 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동시 중국수입의 급등 성장은 고조가 있었다. 첫째는 1972~1974년으로서 3년의 성장 속도는 분별하여 29.6%, 80.4%, 47.7%이다. 그 때의 배경은 이러하였다. 중일, 중미가 접근하고 임표가 거꾸러졌으며, 등소평은 나와서 국무원의 사업을 주치하게 되었고, 아울러 중국이 대폭적으로 서방자본주의국가에 대한 무역을 증가하여 적극적으로 화학섬유 화학비료의 종합설비를 들여왔고 국외와 밀접한 경제적인 왕래를 시작하였다. 둘째는 1978~1980년으로서 성장률이 분별하여 51%, 43.9%와 24.9%였다. 그 배경은 사인반혁명집단 분쇄한 뒤에 ‘양 약진’ 을 크게 한 결과 이다.

<표 2-1>는 중국 각 시기 무역의 평균적인 성장속도에 대하여 비교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 제 2차 5개년계획과 제 3차 5개년계획의 두 개 특수한 시기에 분별하여 나타난 飢의 성장과 낮은 성장 위에 기타의 각 개 발전시기의 상황은 기본상에서 좋았다. 경제부흥시기에 평균적인 성장속도는 최고에 도달하였다. 그 원인의 첫째는 기수가 너무 낮은 것이고 둘째는 아주 큰 전쟁 뒤에 회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不可比 因素가 비교적 많았기 때문 이다. 제 4차 5차 5개년계획 두 개 시기에 국내의 정치경제는 비록 불안정하고 크게 변동하였지만 무역의 성장속도는 매우 빨랐다.

1) 石廣生, “我國對外經濟貿易二十年”, 國際商報(京), 1998. 12. 18

2) 薩公強, “中國的對外貿易發展模式及其經營管理模式”, 共黨問題研究. 1991年第22卷 第1期, p. 12頁

<표 2-1> 각개 발전시기 무역 평균의 성장속도의 대비 (단위:%)

시기	수출입성장속도	수출성장속도	수입성장속도
경제부흥시기 1950~1952년	30.8	22.1	38.5
제 1차 5개년계획 1953~1957년	9.8	14.2	6.1
제 2차 5개년계획 1958~1962년	-3.0	-1.4	-4.9
조정 시기 1963~1965년	16.8	14.3	19.8
제 3차 5개년계획 1966~1970년	1.6	0.3	2.9
제 4차 5개년계획 1971~1975년	26.3	26.3	26.3
제 5차 5개년계획 1976~1980년	20.7	20.3	21.2

자료: 『경제학연구』 “중국대외무역구성발전추세에 대한 사고” 김동 1991



<표 2-2> 중국대외무역의존도의 변화 (단위: %)

년도	수출입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1953	8.85	4.23	5.61
1956	10.04	5.45	5.19
1959	10.46	5.47	4.98
1962	7.15	4.16	2.98
1965	7.04	3.75	3.28
1968	6.44	3.42	3.02
1971	5.08	2.88	2.20
1974	10.81	5.15	5.65
1977	8.86	4.57	4.32
1980	13.05	6.03	6.74

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업무통계』 1985

### 제 3 절 외자 도입 정책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업화 초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선진국의 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특히 경제도약 단계에 진입하면서 막대한 자원을 외자에 의존하여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자는 생산시설의 신설 및 확장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고용 증대를 통하여 국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제품 수출 또는 수입 대체를 통하여 국제 수지의 개선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 1. 건국초기(1949-1960년)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전에는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고 외부 원조를 보완으로” 하는 소위 “自力更生為主, 爭取外援為輔” 라는 기본원칙 하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국민경제 경영원칙은 당시의 국제 정치 및 경제 환경 하에서 실효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동시에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우호국가도 전무한 상태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처음으로 외자를 도입한 것은 건국 후 전쟁으로 인한 폐허의 복구와 제 1차 5개년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소련으로부터 받은 무상 원조와 정부차관이었다. 건국초기에 중국이 구소련 이외의 나라들로부터 차관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동유럽 국가들은 제 2차 대전 후에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를 조직하고 있었지만 모두 전후 복구를 위하여 경제원조와 대외차관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방세계는 중국에 대해 경제봉쇄와 금수정책(禁輸政策)<sup>3)</sup>을 실시하였고, 따라서 중국은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주로 구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50년대 자금과 기술의 주요 출처는 구소련이었고, 외자이용의 주요 방법은 차관과 외환외상거래의 두 가지 방법이었다. 1950년 2월 중·소 양국은 “상호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3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sup>3)</sup>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COM)는 1951년 5월 유엔총회의 금수결의에 따라 대서양조약 가맹국 13개 국과, 그리고 후에 참가한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업무는 소련진영에 전략용 긴급자원이 수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며 소재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중국은 1950년대 전반에 차관과 외환외상거래를 통하여 구소련과 304개의 플랜트 수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1950년 말경에 참여화 되었던 양국간 이념 분쟁을 계기로 구소련이 일방적으로 대부분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완성된 주요 계약내용은 149개에 달하는 중형 기계제조 공장, 화학 공장, 발전소, 자동차 공장, 비행기 공장 등이었으며, 주로 중공업 발전에 중점을 둔 것들이었다. 이밖에도 1950년대에 중국은 외환외상거래 방식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108개 항목에 달하는 플랜트, 82개 항목에 달하는 단일 기계류 등을 수입하였다.

이 기간에 중국은 주로 구소련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동시에 해외 화교들의 자본을 유치하는 등, 비록 제한적이고 소규모 상태이기는 했으나 해외자금을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했던 시기이다. 주로 설비도입에 따른 상환기간 10년 정도의 수출신용과 전문가 파견비용<sup>4)</sup>에 사용되었으며, 프로젝트 건설은 중국의 요구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당시 비록 외국의 선진설비와 기술을 이용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력에 의존한 개발을 계속하려는 자력갱생의 사상무장하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 2. 자력갱생 시기(1960-1970년)

1960년대 초반 이념 분쟁으로 인한 중·소 관계의 악화에 따라 구소련에서 도입되던 외자와 기술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소련이 중국에 파견했던 기술자들로 하여금 서둘러 철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우호적인 중소관계가 돌연 악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중국은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했던 차관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고, 동시에 차관자금의 변제와 경제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이 “抗美援朝”의 구호 하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의하여 경제봉쇄를 당하게 되었고, 이념분쟁을 인하여 소련과의 우호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드디어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력갱생의 구호 하에 경제발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중국이 괄목할 만한 외국의 협력이나 원조가 없는 상태에서 자력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해외로부터의 차관도입과 원조 및

4) 당시 중국에 파견되는 구소련인 기술요원 및 구소련에 파견되는 중국인 유학생과 기술 연수생 등의 비용에 대부분 사용되었다.

직접투자 유치 등도 매우 부진했던 자력갱생 시기에 해당된다.

1960년대부터 소련과의 갈등으로 중국의 유일한 대외차관 도입선마저 끊겼다. 그 후 중국에 쉽게 차관을 제공하는 국가나 국제금융기구도 없었지만 중국 스스로도 자력갱생정책으로 대외차관도입에 소극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중국이 차관도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식량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곡물수입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외국은행으로부터 단기차관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중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 등의 국가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일부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50여 개 항목에 달하는 기술설비를 도입하였다. 그 주용 대상을 석유화학, 기계, 전차, 경공업 부문의 기술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3. 관계개선 시기(1970-1978년)

197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과 서방 국가와의 관계개선, 특히 1972년 닉슨(R. M. Nixon) 미국 전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가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시기에 서방 국가들과 무역협정체결을 통한 무역신용 거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갔던 것이다. 이기간은 중국이 서방 기업들을 통해 중장기 무역신용 형식을 택하여 지속적으로 외자이용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점이 특색이다.

특히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외교수립을 계기로 다소 개선됨에 따라 외자도입과 기술도입의 규모와 범위가 종전에 비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1977년 중국이 미국, 일본, 서독 등의 국가와 체결한 기술도입 계약은 220여 건으로 계약금액도 30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경공업, 야금, 동력공업 등의 부문에 편중되었다. 1978년 외자도입은 이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78억 달러에 달했고, 22개 중점 사업이 도입액의 약70%를 점유하였다.

그러나 산업기술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충분한 고려가 미진했을 뿐만 아니라 수용태세 및 관리운영 등의 부대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적지 않은 문제와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6년 10월 이후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활발히 도입하기 시작했으나,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 수년간에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었다.

1978년 이전까지 약 30년간의 외자 이용은 지지부진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투자방향도 대부분 중공업의 발전에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은 자력경쟁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역할과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 제 4 절 개혁·개방 이전 시기의 환율제도

환율은 기본적으로 자국화폐의 대외적 가격이다. 이러한 가격을 안정시키고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실물경제를 튼튼하고 견실하게 유지하는 길 뿐이다.<sup>5)</sup> 외환의 가격인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 및 기대심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동된다.

한편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단일통화에 고정시키는 단일통화고정환율제도와 복수통화 혹은 특정지표에 연동시키는 복수통화고정환율제도 또는 특정지표 고정환율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에는 자유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가 있고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중간적 제도라 할 수 있는 공동변동환율제도가 있다.<sup>6)</sup>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당국에 의해 환율이 사당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어 대외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반면, 대외부문의 불균형이 대내부문으로 그대로 전파되는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율이 경제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동 조절되지 않아 단속적인 대규모의 환율변동이 불가피해 오히려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대외부문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동함으로써 대외부문의 충격이 대내부문으로 미치는 교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환율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할 경우 경제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다 할 수 있다.

중국의 공식화폐인 인민폐 또는 위안화의 외국통화에 대한 환율제도는 여러 번 바뀌었다. 건국 후 개혁·개방 전까지의 환율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sup>7)</sup>

첫째: 제1단계 국민경제 회복시기(1949-1952년말)

5) 하성근, 『자본자유화와 환율의 안정화 장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서 97권-85호 1997. p.10.

6) 김한수, 『국제화시대의 국제금융상식』 국제금융연구원, 1994. p.91.

7) 최영리, “중국 환율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7. p.11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1952년말까지로서 국내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국내물가의 등락이 심하였다. 그에 따라 국내외의 물가에 연동되어 결정되었던 환율도 상당히 불안정하였다. 1949년 1월 현재 1달러당 600위안이었던 환율이 52차례에 걸친 평가절하가 단행되어 1950년 3월에는 42.0위안으로 525배 상승하였다. 그러나 1950년 3월에 개최된 ‘전국통일재정공작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정 및 경제체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중국인민은행총행 전국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단일화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처에 힘입어 이후 1952년 1월1일부터 위안화의 미 달러에 대한 환율을 공포를 중지하고 영국 파운드를 기본 통화로 지정하였다.

#### 둘째: 제2단계 환율 동결기 (1953-1972년)

이 기간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시기’로서 경제적으로는 사영기업의 사회주의화가 달성되었으며 무역이 경무부 산하 전문수출입공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었다. 환율제도에 있어서는 브레턴우드체제하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위안화의 환율도 안정되었던 시기였다. 특히 1952년 미국은 중국과 단교를 이유로 인민폐에 대한 태환을 동결하였고 중국인민은행도 미국의 달러와의 교환을 정지시켰다. 제 1차 5개년 계획(1953~1957년)까지 인민폐의 가치는 옛 소련의 루블화에 연동되어 있었지만 환율의 표시는 스위스 프랑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 때의 환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정부간 거래에만 내부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공식적으로 환율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이후 1972년 닉슨(R. M. Nixon) 미국 전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양국간 무역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양국간의 무역이 정상화될 때까지 미달러에 대한 인민폐의 공정한율은 1달러당 2.4618으로 동결되었다.

#### 셋째: 제3단계 단일환율제도하 평가절상기(1973-1980년)

1973년 9월 브레턴우드체제 붕괴와 함께 주요 서방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면서 중국의 환율결정 방식도 변화되었다. 그에 따라 중국정부는 1973년 통화박스켓의 가중평균에 의한 환율결정 방식을 채택하여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환율변화에 따라 위안화의 환율을 조정하였다.

1972년 6월 23일 영국 파운드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이후 파운드가 계속 평가절하됨에 따라 영국 파운드를 기본통화로 이용하던 제도를 포기하였다. 초기에는 국제시장에서의 프랑스 프랑의 환율을 참조하여 위안화의 환율을 결정하였고, 제2단계에서는 미 달러, 프랑스 프랑, 일본 엔, 서독 마르크, 스위스 프랑 등 11종 통화의 런던시

장 평균환율의 변동상황을 참조하여 위안화 환율을 결정하였으며, 제3단계에서는 7종 통화(다시 5종통화로 축소)의 미 달러에 대한 환율변동 상황을 참조하여 위안화의 환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1975년 11월 1일부터 미 달러 집단화폐와 독일 마르크 집단화폐의 환율변화를 고려하여 위안화의 환율을 결정하는 일종의 복수통화군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이기간은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계속 약세를 보임에 따라 달러에 재한 위안화의 환율도 계속적으로 평가 절상되어 1980년 12월에는 1달러당 1.448위안에 달하였다.<sup>8)</sup> 또한 1979년 3월에는 전문적인 회환기구로서 국가외환관리국을 설립하여 중국인민은행은 담당해 온 환율결정권한을 위양하였다.

---

<sup>8)</sup> 1972~1980년에 인민폐의 달러에 대한 환율은 매년 평균 5.3% 이상씩 평가 절상 되었다.

## 제 3 장 개혁 · 개방 이후의 경제 · 무역 정책

### 제 1 절 대내 경제 발전 계획

#### 1. 등소평 시기의 개혁 · 개방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10여년간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중국의 경제 상태를 극도 악화시켜 중국전체를 빈곤상태에 이르게 했다. 1978년 중국공산당 제 11기3중 전회에서 등소평(鄧小平) 당내 다수파를 장악하면서 등소평은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소평의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 가. 제 6차 5개년 계획(1981-1985년)

80년대 들어서 중국정부는 경제조정을 통해 경제관리체계의 개혁과 산업간 불균형발전을 시정하는 한편, 20세기 말까지 GNP를 4배로 증가시키고 90년대에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85년의 농공업 총생산액 목표를 8710억 위엔,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 농업 4%, 경공업 3%로 계획하였다. 이 시기의 중국의 농공업 총생산액은 110% 증가하였는데 그 중 농업은 81%, 공업은 120% 증가하여 원래의 목표치를 대폭 상회하는 성장을 달성하였다.

##### 나. 제 7차 5개년 계획(1986-1990년)

이 7.5계획의 주요 목표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달성하는 것이었으며 기존 기업의 기술제조의 중점 건설, 인재의 양성, 국민생활수준의 개선 등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다. 즉 ①농업의 안정 성장 ②소비재생산과 민간 건축업의 확대 ③에너지 등 기본건설 분야의 중점 프로젝트의 건설 ④서비스 산업의 발전 ⑤지역체제의 확립과 대도시 중심의 경제권역 구성 등을 추진하였다.



## 다. 농촌 경제체제의 개혁(1978-1984년)

중국의 개혁은 먼저 농촌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촌개혁의 내용은 바로 종전의 인민공사와 같은 방법을 지양하고 책임제를 실시하여 농민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 (1) 인민공사의 개혁

인민공사는 1958년 초에 설립되었다. 지난 20년간에 걸쳐 유지되어온 인민공사제도는 장단점 가지고 있었다. 인민공사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노동력이 최대한 동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농촌자본蓄積에 의해 서서히 공업의 정상을 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장점에 비해 인민공사제도는 농민들에게 생산자극성을 결여된 제도였고 인민공사는 개인이익과 집제경제체제의 마찰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능률적인 관리가 되기에는 부적당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 중국의 실용주의 지도자들은 1978년 3중 전회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경제개혁정책의 하나인 인민공사의 관리제도改善과 농민 작업 등기를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1982년에는 인민공사 혁명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대신 인민공사 관리위원회로 바뀌어졌다. 또한 인민공사를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시켜, 순수한 경제부문으로 만들었다. 1982년에 채택된 헌법에서는 ‘정사분리’를 채택하여 인민공사는 다만 농업생산합작사 등과 함께 ‘합작사경제’라는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 규정되었다. 이는 인민공사 생산대의 명칭이 농업생산합작사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58년 인민공사가 설립된 이후 중국의 농촌생활을 지배해 왔고, 마오쩌둥의 사회주의체제를 상징하던 인민공사는 사라지게 되었다.

### (2) 생산책임제의 개혁

중국에서 생산책임제가 구성된 것은 1950년에 일이다. 당시의 생산책임제는 생산대와 농가의 계약에 따라서 특정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한 제도였고, 이때 계약당사자는 할당된 목표 이상의 초과분은 계약당사자의 소유로 허용되는 제도였다.

이러한 생산책임제는 다시금 등장한 등소평의 농업경제개혁의 일환으로 1978년 제 11기 전대회 3중전회 이후 다시금 채택되었다. 등소평은 실용주의의 사회주의 현대화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을 중시하였으며, 농업부분에 대한 일련의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된 농업생산책임제는 다양한 제도의 총칭으로서 5가지의 형태로 크게 분류된다. 1981년 6월까지의 정액포공과 연산도조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 후 급속히 개인 그리고 농가의 생산책임제도 이행해 1984년 10월에는 포간도호가 38%로 주류를 이루었다. 그 후 급속한 보급에 의해 1984년 말에는 포간도호가 99%의 생산대에서 실시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개별 농가에 의한 경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민공사제도의 개혁과 함께 고도 집중형 농촌경제체제는 1984년 말부터 1985년 초에 걸쳐 완전히 채택된 것이다.

## 라. 도시경제체제 개혁

개혁·개방의 기본전략은 농촌에서 출발하여 도시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중국정부는 농촌개혁의 중점을 도시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도시부문의 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생산의 기본 단위인 기업운영 메카니즘의 개혁, 즉 도시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 소유 기업에 대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도시개혁의 중심인 기업개혁의 목적은 기업의 활력과 생산성의 제고이다.

### (1) 재정관리체제의 분권화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1979년부터 기업이윤보유제도가 도입되었고, 1983년에는 利改稅<sup>9)</sup> 시험적으로 실시된 데 이어서 1987년부터는 국영기업에 대한 경영청부제가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과 관계에 있어서도 1980년에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지를 구분하여 지방에 청부시키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다양한 개혁이 시도되었고, 1988년부터는 전국의 37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에서 약간 상이한 형태의 재정청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sup>9)</sup> 기업의 이윤상납제에서 잡세제로의 전환.

재정청부제의 골자는 지방의 세수 증대와 경제건설 의욕을 유발시키기 위해 각 지방에 상이한 형태의 상납액 청부 방식을 결정한 후 청부액을 초과하는 재정수입은 모두 지방에 유보케 한다는 것이었다. 각 지역의 재정능력과 경제상황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실시된 재정청부제는 지역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원래부터 국가의 보조를 받아온 낙후지역과 국가의 주요 세수원인 세 직할시를 제외한 각 지방은 청부액을 초과하는 재정수입 유보액을 지방경제 발전에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의 경제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 (2) 기업관리체제의 분권화

중앙부터에 의한 수직적 통제와 소재지 지방정부에 의한 수평적인 통제라는 이중관리 아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기업 관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제도개혁을 추진해 왔다. 기업자 주권 확대조치 실시(1978~1980년)와 각종 경제책임제의 도입(1981~1982년), 이개세 실시(1983~1986년), 경영청부제의 보편적 실시(1987년 이후)등이 그것이다.

## 마. 대외개방정책

1978년 12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 11기 3중전회를 계기로 하여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개방정책의 골자는 중국의 전통적인 농촌지역과 상대적으로 더 발전된 도시지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서 발달한 연안지역에 외국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 이들 지역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나 원료를 연안지역이나 내지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므로 중국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즉 연안지역을 대외개방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에 노동집약형 수출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외화를 벌어들인 후 이를 국내중공업 발전과 내륙지방 개발에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 (1) 경제특구

경제특구란 국가가 경제 개방의 필요에 따라 대외 경제와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특수정책을 아울러 실시하므로 대외개방과 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 경제구이다. 이는 등소평의 대외개방정책의 산물이며, 중국을 세계의 무대로 이끌어가는 첩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979년 深圳, 珠海, 汕頭, 廈門에 시험적으로 특별구역으로 결정하였다. 이 당시에 수출특별구역이라 하였고, 1980년 5월에 정식으로 경제특별구역이라 명명하였으며, 1980년 8월에 <광둥성경제특별구역조례>를 공보하고 경제 특별구역을 건립할 것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1988년 전국 최대의 경제특구인 海南島에는 설립하였다. 이러한 특구는 중국 개혁·개방에서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의 유치를 주도하는 대외개방의 문호이자 중국이 세계를 향해 현대화로 나아가는 발판이다.

### (2) 경제개발구

경제특구에서 성공을 보이자 중국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더욱 확대할 목적으로 1984년 4월 북경에서 “연해지역도시좌담회”를 개최하고 14개 연해도시에 단계적으로 경제개발구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연해 14개 도시를 북으로부터 대련, 진황도, 천진, 연태, 청도, 연운항, 남통, 상해, 영아, 온주, 복주, 광주, 신강, 북해로 연결하였다. 주요지역에 위치한 도시를 개방하여 경제개발구를 설치한 이유는 연해인접 도시들이 기술, 문화 및 교육수준이 높고 외자 및 선진기술의 도입과 그 소화능력이 크며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리고 연해인접지역과 내륙지역에 효율적으로 경제건설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1985년 1월에 다시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문남하문, 장주, 황주삼각주를 “연해 경제개발구”로 개방했다, 즉 “4개 경제특구-14개 연해개방도시와 해남도-3개 연해 경제 개발구”로 확대하였다.

1988년 3월에는 대외개방의 범위를 다시 광둥성 전역, 복건성 전역과 양자강 삼각주 및 요동반도와 산둥반도에까지 확대시켰으며, 이러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개방하고 설치한 정책목표는 경제개발을 시기를 앞당겨 달성하여 4개현대화를 효율적이고도

빠른 시기에 완성하려는 비중을 두고 있었다.

## 2. 짱저민 시기의 전면개방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경제의 현대화 계획은 1982년 중국공산당 제12차 대표 대회에서 20세기 말까지 농공업 총 생산액 4배화 계획 목표를 결정하고 추진하였다. 제1단계(1980~1990년)에는 주민들의 식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온포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2단계(1991년~2000년)에서는 안정된 생활수준에 기준을 둔 소강수준에 목표를 두었다. 제1단계의 결과 1990년 GNP가 1980년 비교 134.7%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표연도 이전에 식생활 문제가 해결되었다.<sup>10)</sup> 짱저민(江澤民)은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책임을 지고 퇴진한 조자양(趙紫陽)총서기의 뒤를 이어진 새 국가 지도자이다.

### 가. 제 8차 5개년 계획(1991~1995년)

이 계획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목표를 6%로 하고 공업성장은7%, 농업성장은 3.5%로 설정하였다. 부문별 정책으로는 ①사회 총소요와 총공급의 균형. ②농업생산 증점. ③기초공업과 사회간접자본의 강화. ④가공공업의 재편성. ⑤교육, 과학기술의 강화. ⑥국방의 현대화. ⑦연해지역 성장력의 내륙 이전 ⑧중국적 사회주의 시장경제 성립 등이 있었다. 그 성과로 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이 목표치 2배에 해당하는 11.6%였으며 1인당 GDP는 95년 570US\$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성과의 원동력은 투자율의 증가에 있었는데 1990년 투자율은 24%였던 데 비하여 1995년 투자율은 34.4%로 크게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투자의 증가는 외자의 유입이 증가됨으로써 가능하였다. 1979~1983년에 유입되었던 외자가 1,471백만불이었으나 1984~1985년에는 약 50억불의 외자가 유입되었다.<sup>11)</sup>

10)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연감』, 1998. p.21.

11)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연감』. 2000. P.604.

## 나. 제 9차 5개년 계획(1996-2000년)

95년 9월 28일 중국공산당 제 14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9차 5개년 계획은 당분간 중국 경제정책의 골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이다. 또한 이에 따른 주요 정책 목표로서 1995~2000년에 연평균 9.3%의 고속성장과 2000~2010년에 연 8%의 성장을 유지를 내걸고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① 2000년의 1인당 국민소득 1300\$(80년 경상가격 기준)달성.
- ② 계획기간중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건축업을 4대 중점육성 산업으로 지정하여 2000년에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중이 1:1이 되도록 조정.
- ③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연평균 38%의 고속성장을 유지.
- ④ 2010년까지 경제관리 체계와 운용 메카니즘의 규범화, 법제화 추진과 자원 배치의 합리화.

## 다. 전방위 개방

1980년대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이어져온 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4연해개방으로 특징지워지는 3단계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짱저민 총서기 주룽지 총리 주도하에 상해 푸둥신구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였고, 그동안 추진해온 연해 중심의 부분개방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방의 면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1년 4월 중국정부는 기존의 연해지역 개방 이외에, 북한, 러시아, 몽고,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랴오닝, 내몽고, 신장, 광시, 운난(雲南) 등의 13개 변경도시, 현, 진을 변경무역구로 지정, 대외에 개방하였고, 그얼마 뒤에는 장수성 린원강(連雲港)에서 란조우(蘭州) 우루무치(烏魯木齊)에 이르는 철도연변을 개방하는 ‘연선을 개방하였으며, 나중에는 상하이로부터 우한에 이르는 양자강 연안의 28개 시와 8개 縣을’ 연강 개방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개방하여 동남부 연해 지역 부분개방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서부 내륙 변경 지역으로까지 전파 확산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같은 소위 ‘4

연'의 전면개방정책은 1992년 5월 당중앙 제4호 문건으로 확정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고, 10월부터는 다음의 사항을 포괄하는 '4연' 정책이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다.<sup>12)</sup>

- ① 기존 경제 특구 면적의 확대와 보세구역의 설치
- ② 상하이 양자강 연안지구 28개 시 및 8개 縣을 개방지역을 지정
- ③ 국경도시 및 내륙지역의 대외개방
- ④ 내수시장의 단계적 개방 확대
- ⑤ 무역관리 제도의 개선, 2백여 개의 품목의 관세 인하, 수입조절세의 폐지

(1) 양자강유역 개방정책<sup>13)</sup>

중국에서 창장으로 불리는 양자강(揚子江) 유역 개방정책은 1992년 6월에 리펑국무원총리가 주재한 창장삼각주와 창장연안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좌담회와 그해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총서기의 발의로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1993년에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서진(西進)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장유역의 전면적 개발과 대외개방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창장삼각주지역의 상하이 푸둥신구 개발, 중상류의 산샤댐건설, 중류의 연강지역항구개발, 상류의 자원개발, 강유역의 6개 지구의 중점종합개발지구 지정 등이 포함되었다.<sup>14)</sup> 이를 계기로 창장유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 지역 개방정책의 추진 내용으로서 5개 연강개발도시 가운데 충칭시, 우한시 및 우후시에 경제기술개발구가 설립되고 연안23개 도시에는 100여 개의 경제개발구가 설립되었다. 각 지방정부는 이들 경제기술개발구와 경제개발구에 국내외의 투자자금과 기술항목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해개발지역에서 실시된 우대정책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외자도입에 경제특구보다 유리한 특혜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상하이 푸둥신구, 쑤저우공업원구 개발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첫째, 푸둥신구 개발과 개방: 창장(長江) 삼각주지역의 대상해경제권 개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푸둥신구(浦東新區)이다. 1990년 국무원은 상해의 황푸장(黃

12) 김익수, 『중국투자론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9.9 p.25-29.

13)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나남출판 2004년 9월 15일 발행. pp.159-164.

14) 최수웅,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9). p.91.



浦江) 동쪽 창장 입구에 위치한 면적 350km<sup>2</sup> 의 푸둥지역을 신구, 즉 신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총체적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푸둥신구의 건설계획은 처음부터 경제특구 등 다른 개방지역과 같이 위탁가공업에 의존하지 않고 3차산업과 첨단기술산업 중심지의 기능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에 따라 건설구역이 4개로 나누어졌다. 그것은 ① 류자꾸이(陸家嘴) 금융·무역구 ② 진차오(金橋) 수출가공구 ③ 와이까오차오(外高橋) 보세구 ④ 장장(張江) 첨단과학기술단지이다.

푸둥신구 건설계획 기간은 30~40년으로 비교적 장기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뉘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제 1단계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로서 도로, 교량, 발전소, 항만, 보세구, 건설로 외국인투자 기반시설 정비가 주요 개발항목이다. 중국의 8·5계획 기간 에 맞추어 각종 건설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중국정부와 상해시는 개발초기부터 선진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그들의 자문을 전폭 수용하였다. 예컨대, 24.5km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도로변 20미터의 녹지대 조성 제안이 받아들여져 10여만 평방미터의 기존 건물들이 과감히 철거되었다.

제 2단계는 9·5계획기간과 같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제2단계에서는 도로 및 기타 인프라 정비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구, 금융센터 제 1기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 3단계는 2001년부터 20~30년간이다. 이 기간에 상해시의 전면적 개발은 완성된다. 여기에 포함된 주요 목표는 푸둥신구와 푸시(浦西)의 구(舊) 상해를 양측으로 하여 상해시를 세계적인 금융, 무역, 정보산업의 중심지와 수출지향형 현대적 생산기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푸둥신구 개발을 통하여 상하이 등 창장 삼각주지역의 도시발전을 가속화시키고 그것을 창장유역의 내륙지방경제와 연계시켜 국가경제발전을 이루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푸둥신구의 개발에 경제특구보다 더욱 광범위한 특혜정책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이곳에 투자하는 외자기업들이 경제기술개발구와 경제특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세, 소득세 및 수출입 허가증 감면 등을 받는 것은 기본이다. 민간자본에 의한 지역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가 허용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먼저 금융·보험업, 백화점, 슈퍼마켓 등 3차 산업 부문의 기업설립과 주식발행 및 증권거래소 상장이 허용된 것도 이곳이다.

둘째, 장자강의 국제도시화와 쑤저우개발: 창장삼각주지역의 장쑤성 장자강[張家港]



의 국제도시와는 연강지역 개방정책의 성공적 모델로 꼽힌다. 창장삼각주 깊숙이 위치한 중국 유일의 내하항(內河港)을 가진 장자강시는 대외개방정책에 힘입어 1만 톤급 선박 20 척의 접안이 가능한 항구를 건설하였다.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1,500만 톤이며 미국 및 유럽과 매월 25편의 정기항로가 개설되어있다. 장쑤성 해운화물의 절반 이상이 장자강에서 선적되어 창장을 통해 동중국해로 나간다. 중국정부는 이와 같은 해운능력에 따라 장자강에 상해, 텐진 다음으로 큰 보세 무역을 설치하였다.

창장삼각주지역에서 푸둥신구, 장자강과 함께 연강지역 개방정책의 또 다른 주요 거점은 장쑤성 쑤저우시이다. 쑤저시는 연강지역 개방정책에 맞추어 1990년 상하이를 배후로 하는 공단으로서 쑤저우신구(新區)를 개발하였다. 종합기능 도시를 목표로 하는 쑤저우신구는 고도(古都) 쑤저우 서쪽 52km<sup>2</sup>의 면적에 과학기술구, 종합경제발전구, 주거·휴양구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1992년에 등소평의 “싱가포르를 배우자”는 지시에 따라 중국정부는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1994년에 70km<sup>2</sup>의 쑤저우 공업원구(工業園區)가 조성되었다. 이곳은 중국의 다른 공단보다 땅값이 2.5배나 비싸 만큼 완전한 인프라시설과 부지가 완비되어 있다,<sup>15)</sup>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싱가포르 식 관리 노하우인 원스톱관리제도(One-Stop Management System)<sup>16)</sup>가 구축되어 있다. 공상관리국, 노동인사국, 재정세무국, 건설관리국, 국토계획국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10여 개의 기구들이 한 곳에서 모여 신속한 업무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기관, 국제투자자문회사, 회계사무소, 변호사사무소, 공증사무소 등 기업들이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개발 후 7년만에 세계 10대 첨단공업단지가 된 쑤저우 공업원구에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타이완, 한국 등의 유명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쑤저우 공업원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나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제특구 및 푸둥신구와 같은 세제상의 특혜가 주어진다. 특히 이곳은 “중국 안의 싱가포르”라고 할 만큼 자율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이나 상하이 장강(張江)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비해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가 거의 없다.

15) 중국에서는 이것을 “9통1평(九通一平)”이라 하는데, “9통”이란 전기·공업용수·열·가스·상수·하수·배수·통신·도로가 완비된 상태이고, “1평”은 용지가 굴곡이 없이 잘 정리된 상태를 뜻한다.

16) 중국 용어로는 “일참식관리제도”(一站式管理制度)라고 한다.

(2) 내륙 국경연변개방정책

중국 국무원은 1992년 전방위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기술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경연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구체적 조치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흑룡강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헤이허시와 수이펀허시를 국경연변의 개방창구로 하여 국경무역과 경제협력에서 성급의 관리권한이 부여되었다. 성도인 하얼빈시에는 흑룡강성 경제발전추진모체로서 성·시 공동 건설 체제 수립이 가능하도록 고신 기술 산업구와 경제기술개발구 정비와 함께 성급의 토지사용결정권, 관광관리권 및 외사관리권이 주어졌다.

이러한 정책은 국경연변지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연해지역 기업들도 국경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경무역에 큰 활력을 주었다. 흑룡강성·지린성·네이멍구자치구는 러시아·북한 등과, 그리고 운난성은 미얀마와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국경무역액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흑룡강성의 CIS와 국경무역액은 매년 7~8억 달러에 달한다. 이밖에도 몽골, 인도, 베트남, 라오스 등과 국경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린성은 1989년에 두만강 하구의 러시아 및 북한과의 접경도시인 훈춘시를 동북아 지역의 무역기지 역할을 하는 내륙 경제특구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sup>17)</sup> 훈춘시는 3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무역에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러시아와 접경구역에 훈춘 통관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 북한과의 접경구역에는 샤투요쯔 [沙坨子] 통관지를 두고 있다. 훈춘국경경제협력구는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경공업, 섬유, 식품, 건축자재, 일용화공품, 전자제품 등의 수출가공업에 중점을 둔 개방정책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흑룡강성은 1990년에 러시아의 블라고 베쉬첸스크(Blagovesh-Chensk)와 흑룡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헤이허시를 중국북부 국경지방의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sup>18)</sup> 헤이허시는 연변개방도시 지정 이후에 종합무역서비스구, 경제기술개발구, 대헤이허따오 [黑河島] 무역구, 시강쯔 [西崗子] 에너지개발구, 아이후이 [愛輝] 수출개발구 등을 건설하였다. 1992년 국무원의 결정에 의하여 흑룡강성 동부 송화강 [松花江] 을 끼

17) 이것은 유엔개발계획기구(UNDP)에 의해 추진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였다.《大公報》(香港) 1989.9.11 참조.

18) 《經濟導報》 1990.9.3 참조.

고 있는 자무쓰 [佳木斯] 시에는 5개의 1천 톤급 정박장을 갖추고 연간 6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가진 무역전용부두가 건설되어 동해와 태평양으로 통하는 무역항로로 쓰이고 있다.

네이멍구자치구는 이미 개방된 13개 통관지를 국경개방지대로 하며, 1990년에 2개의 국경무역구와 4개의 국경정기교역시장을 개설하였다. 네이멍구의 주요 공업도시인 호호트, 빠오터우 [包頭], 우하이 [烏海], 지닝 [集寧], 퉁랴오 [通遼]는 연선 경제기술개방대이다. 1991년에 <외국인투자장려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른 개방지역의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외자기업들이 CIS, 몽골, 동유럽으로부터 바터(bater)무역방식으로 생산 원재료, 기술, 설비를 들여오는 것을 특별히 장려하는데 차이가 있다.

## 제 2 절 대외 무역 발전 상황

개혁·개방 이후 대외무역은 대내외적으로 유리한 대외무역환경과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아 침체에 빠져 있던 세계경제는 80년대 들어와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국제 분업을 추구하는 선진기업들의 활발한 국제투자활동으로 세계무역환경이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외국자본과 외국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단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였다. 80년에는 광둥성과 복건성에 4개의 경제특구가 완성되어 많은 화교 및 외국인들이 三資企業을 세우고 무역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중국의 무역증가율이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하고 무역흑자가 19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급증하던 무역발전추세는 1982년 무역증가율 -5.4%, 수출증가율 1.4%, 수입증가율 -12.4%로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다. 이것은 과열된 무역경기에 대해 중국정부가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중복지도입으로 외화낭비가 심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승용차, TV, 냉장고, 세탁기 등 소비성이 강한 상품을 수입규제대상에 포함시키며 광둥성 고급관리와 무역업자간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하였다.<sup>19)</sup>

<sup>19)</sup> 오용석, “중국의 대외무역과 韓中 수출경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권-36호, 1993. 12, pp.58-65쪽.

대외개방의 범위가 동부 연해지역 14개 항구도시로 확대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투자설비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무역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기업 개혁의 실행으로 정부기관의 무역기업에 대한 간섭도 줄어들고, 일부 무역권한의 지방 이양과 무역대리제의 실시가 있었다. 더욱이 내부 결제 환율이 사라지고 공정 환율과 시장 환율에 의한 이중환율제도가 형성되어 인민폐가 대폭 평가절하 됨에 따라 해외시장에 중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84년 85년의 무역증가율은 각기 22.8%, 30.0%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85년에는 수입증가율이 54.2%로 수출증가율 4.6%보다 10배 이상 벌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149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중국정부가 수입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수입조절세를 실시함에 따라 1986년에 수입증가율이 1.5%로 급격히 하락하고 무역증가율도 6.1% 둔화되었다.

대외개방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국기업의 중국투자열이 가속화되어 수입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무역증가율도 24.4%로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경기과열로 인민이 생활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물가상승이 이어지자 중국정부는 치리정돈을 정책 기조로 삼고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행하였으며 89년에는 천안문사건이 발생하여 중국경제가 위축되고 외국기업도 대 중국 투자를 관망함에 따라 대외무역 열기가 식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89년, 90년의 무역증가율은 각기 8.7%, 3.4%로 하락하고 특히 90년의 수입증가율은 -9.8%로 대폭 떨어졌다.

1992년 3월의 제7기 전인대 5차 회의에서는 경제조정정책의 종결과 개혁·개방의 새로운 가속화 방침이 선포되었고,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체제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정식으로 천명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됨에 따라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대 중국 투자를 전개했다. 그래서 92년, 93년의 무역증가율은 각기 22.0%, 18%로 대폭 상승하고 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온 무역의존도가 92년도에는 35%에 달해 이제는 중국경제가 세계 경제 환경 안으로 들어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94년에 중국정부는 조세, 금융, 투자 무역 등 여러 방면에 중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무역증가율이 93년 18.2%에서 94년 21%로 소폭 상승한 반면, 수출증가율은 21%에서 31.9%로 대폭 상승하고 수입증가율은 오히려 28.9%에서 11.3%로 하락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96년 수출상품 부가가치세 환급율이 종전의 17%, 13%, 6%에서 9%, 6%, 3%로 하향 조정되어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했다<sup>20)</sup>. 또한 평균관세율이 35%에서 23%로 하향 조정되고 176항목의 수입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허가증조치가 취소되었다. 1977년부터 중국경제가 공산품 재고급증, 유효수요의 하락 등으로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에 빠진 가운데,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시작되었고 98년에는 중국 무역증가율은 198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하락하고 수출·수입증가율도 각기 0.5%, -1.5%로 대폭 떨어졌다. 중국정부가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1월1일부로 방직품등 여러 상품에 대한 수출상품 부가가치 환급율을 9%에서 11%로 올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수입에 대한 관세 및 수입조절세의 감면조항을 다시 적용하며 수출장려를 위해 수출금융을 확대시켰다<sup>21)</sup>. 그러나 이러한 정부조치는 시기상으로 늦은 감이 있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2000년에 들어와서 무역증가율은 31.5% 대폭 상승하고 수출·수입증가율도 각각 27.8%, 35.8로 상당히 높고 무역총액은 작년보다 1000억 달러 이상 늘어나 무려 4743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대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가 회복되면서 중국 상품 수출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정부의 수출시장 다원화전략의 실행으로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대양주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여러 수출상품 부가가치 환급세율 17% 정도까지 상향조정하고 수출금융을 촉진시키며 제조업체의 수출권한을 확대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 제 3 절 무역관리체제의 변화

#### 1. 1980년대의 개혁

중국정부는 종전의 무역관리체제의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1979년부터 무역관리체제의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0년대 초반에는 중앙집중의 대외무역 관리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외무역 경영권의 분산, 工貿結合(생산기업과 무역회사를 결합시키는 것), 무역계획체제의 개혁, 무역재무체제의 조정, 무역행정관리제도의 개선, 외환유보제도의 실행 등 일련의 조치를 실행하고 1988년에는 무

20) 王雲霞, <淺析外貿政策調整對我國經濟的影響>, 北京商學院學報, 1997. 3. p.58쪽.

21) 王思粵, <大陸對外貿易受金融風暴衝擊之評估與展望>, 經濟前瞻 (臺北). 1999. 1. pp.88-89쪽.

역공사의 경영효율을 높이려고 대외무역 경영책임제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대외무역권리 권한의 분산

### (1) 대외무역경영권의 분산

중국정부는 1979년부터 종전의 대외무역부에 의한 무역독점체제를 일부 철폐하고 지방정부, 국무원 산하의 부서, 일부 생산기업 등에 대외무역경영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적용대상의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수출상품에 대하여 分給관리를 실시하였는데, 일부 大宗상품, 국민경제에 중요한 상품,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부 산하의 貿易專業總公司<sup>22)</sup>가 담당하고, 그 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경영권을 가진 부서나 기업이 담당하도록 수출입 업무를 개방했다.

또한 중앙집권의 대외무역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켰다. 종래의 대외무역항은 주로 廣州, 大連, 上海, 青島, 天津 등 몇 개의 항구에 불과하고 대외무역경영권도 무역전업 총공사와 연해 주요항구에 있는 分公司에만 부여될 뿐, 기타지역의 무역分公司는 대외무역경영권한이 없고 收購<sup>23)</sup>와 수출화물수송만 담당했다. 이제는 무역체제 개혁에 따라, 중국 29개 省, 直轄市, 自治區, 9개 計畫單列市, 4개 경제특구에 대외무역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정부산하에 전문무역공사를 두어 당해지방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특산품의 수출활동, 또는 그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의 수입활동을 허용했다.

국무원 공업부 산하에 冶金, 有色金屬, 석탄, 전자, 선박, 석유화학, 농업 기계 등 10여개의 수출업공사를 설립하여 당해 공업기업의 생산품과 원자재 수입을 허용했다.

22) 貿易專業總公司에 속하는 무역회사에는 糧油食品進出口總公司, 土產畜產進出口總公司, 紡織品進出口總公司, 輕工業品進出口總公司, 工藝品進出口總公司, 化工進出口總公司, 機械進出口總公司, 五金進出口總公司, 技術進口總公司(郭金招標公司, 備品配件公司, 技術貿易諮詢公司), 儀器進出口總公司, 包裝進出口總公司, 醫療保健品總公司, 對外貿易運輸公司, 造船公司 등 15사가 있음.

23) 구매의 일종으로 대외무역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수출목적으로 생산업체의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 (2) 공업과 무역의 결합추진

종전의 공업(생산기업)과 무역(무역공사)의 분리형태는 생산자와 수출업자를 분리시켜 생산기업이 무역활동에 배제되고 이는 수출품의 품질저하, 디자인, 포장기술의 낙후 등의 문제점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981년부터 생산기업과 수출업자를 연계시키는 개혁이 추진되었다. 工貿結合의 경영방식은 다양하나 주로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됐다. 하나는 무역공사와 공업부문이 ‘四聯合, 兩公開’ 원칙에 따라 연합경영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工貿쌍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工貿聯營公司를 설립하고 수출의 손익과 위험을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다.

## (3) 수출입 품목 허가 관리

1980년 이전에 대외무역은 국가기관인 수출입전문총공사(輸出入專業總公司) 및 그 지사가 수출입 권한을 가지고, 국가계획에 따라 수출입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수출입허가증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외개방이후 수출입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업이 증가하게 되면서 내구소비재의 대량수출과 무분별한 수입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역기업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 대외무역경제부는 1980년 6월 ‘수출허가증제도에 관한 잠정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국무원은 1984년 1월 <수입허가증에 관한 잠정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첫째, 수출허가증 제도: 수출허가증 제도를 살펴보면 수출업체가 수출허가대상품목<sup>24)</sup>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출 전에 대외경제무역부 등 지정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수출허가증(E/L: Export licence)을 수령한 후 세관에 수출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수출허가증은 일반적으로 한 번 수출시 한 장의 허가증이 요구되며, 매년 발행일로부터 최장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출허가증을 가지고 유효기일 내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품, 보상무역 수출품, 중국 특산품의 경우에는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최장 6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12회까지 복수로 사용할 수 있다.

<sup>24)</sup> 수출허가대상품목은 다음 4가지 ① 국가에서 수출할당이 주어진 상품. ② 대외무역경제부가 최저수출가격을 규정한 상품. ③ 관련 기관에서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상품. ④ 국제시장의 변화나 국가정책으로 인해 일 정기간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수입허가증: 제도수입업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 전에 지정된 발급기관에서 수입허가증(I/L: Import Licence)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수입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국가계획위원회 등이 발급하는 수입유효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입허가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는 수입허가 전에 수입물품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뒤 수입허가증을 발급함으로써 무분별한 수입증가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허가증 유효기간의 연장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일단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입허가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연장을 받을 수 없다.

#### (4) 수출입대리제도의 추진

전통적인 무역체제에서의 무역경영은 기본적으로 계획적인 구매방식이었고, 생산기업은 생산만을 무역공사는 판매만을 책임지어 생산기업은 외국상인과의 상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국제시장 수요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1985년 초부터는 輸出代理制의 도입으로 무역공사는 생산기업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수출하여 수수료만 챙기고 무역의 손익은 생산기업이 책임지게 되었다. 따라서 무역공사는 더 많은 수수료를 얻기 위해 생산기업과 연계, 무역대상을 찾고, 생산기업 또한 무역의 손익을 책임져야 하므로 주동적으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시장 수요변화를 잘 파악하여 잘 팔리는 상품을 생산하게 되었다.<sup>25)</sup>

#### (5) 수출입계획관리제도의 개혁

이 개혁은 무역상품의 指令性計劃범위를 축소하고 指導性計劃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sup>26)</sup> 즉 指令性계획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일부 大宗수출입상품에만 적용되고 그 지표내용도 수출입총액만으로 제한되었다. 1985년부터는 대외경제무역부가 수출화물의 指令性계획을 편제, 하달하지 않고 대외무역경영권을 보유한 무역공사나 생산기업이 자주적으로 수출계획을 편제하도록 했다.

25) 苏灼基 编著, 강준영 옮김, 『中國經濟概論』 (서울: 지영사, 1995), pp.777-778쪽.

26) 指令性계획은 정부가 무역공사나 생산기업에 하달하는 행정명령이며 그 지표는 주로 수출입수량, 상품종류, 상품가격등임. 指導性計劃은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참고지표이며 정부는 간접적인 경제수단과 행정간여로 기업을 지도함.



(6) 무역재무관리제도의 조정

무역전업총공사와 분공사의 손익은 예전대로 중앙재정이 책임지며 공업부산하에 신설된 무역공사나 工貿結合公司의 손익도 중앙재정이 책임진다. 다만 지역무역공사의 손익은 지방재정이 책임지고,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등 종합상사는 재무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다.

(7) 무역행정관리제도의 개선

1982년에는 종전의 대외무역부가 進出口管理委員會, 外國人投資管理委員會, 對外經濟聯絡部 등의 권한과 기능을 흡수하여 對外經濟貿易部로 개편되었다. 또한 상해, 천진, 광주, 대련등 주요 무역항에는 對外經濟貿易部特派員辦公室이 설치되어 일부 수출입허가증을 발급해주는 등 수출입관리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무역행정 兩級 관리제도의 실시에 따라 중앙의 대외경제무역부와 지방의 각 성, 시, 자치구, 계획단열시의 대외경제무역청은 무역상품을 구분해서 자기의 권한내에 수출계약 심사, 수출입허가증 부여, QUOTA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로 인해 지방의 수출관리 권한은 확대되고 중앙(대외경제무역부)은 일부 중요한 大宗상품만을 취급하게 되었다.

(8) 외환보유보제도의 실행

개혁이전의 중국은 엄격한 외환관리를 실행으로 모든 수출업자는 획득한 외환을 중국인민은행을 통해 국내화폐로 환전하고 수입업자는 국가계획위원회의 년도수입계획에 따라 외환을 분배받아야만 했다. 1979년부터 시행된 외환유보제도<sup>27)</sup> 따라 지방정부, 부문, 기업은 획득한 외환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 1985년 외환유보비율은 총외환의 25%, 특히 광동성과 복건성의 기업은 30%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27)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중에서 일정비율을 중앙에 상납하고 나머지를 지방정부나 해당수출기업 및 수출품을 제공한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유보의 의미는 외화현금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한도액을 가리키는 외환액도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

(9) 수입제도의 개선

중국정부는 1984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화물 허가제도 임시조례>를 발표하고 1987년부터 42종 상품에 대해 수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했다. 1985년부터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14종 상품에 대해 수입조절세를 징수하고 일체의 수입화물에 대해 일정비율의 공상통일세를 부과했다.<sup>28)</sup>

중국정부의 이러한 무역관리제도의 개혁에 대한 노력으로 대외무역방면에서 정부의 독점경영, 생산과 판매의 부조화 등의 문제점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 사회주의 무역체제의 약점이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즉 무역공사의 손익을 따지는 무역재무관리제도는 거의 개혁되지 않아 지방무역공사는 수출목표 달성에만 주력 했지 손익 계산은 상당히 소홀히 여겨 재무상태가 부실하게 되었다. 또한 종전의 무역가격제도가 여전히 시행되어 무역공사는 재정상의 손실을 입고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외환유보제도의 시행목적은 본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수입 수요를 유발 시켜 수입 증가로 무역 적자를 가중시켰다. 1984-1986년까지 3년간의 무역적자는 각각 12.7, 149, 11906억불로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984년에는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여 외환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1986년에는 무역공사들이 국내의 收購물가를 올리고 국외의 판매가격을 낮추는 악성경쟁이 발생했다. 따라서 무역공사의 자주경영과 손익책임제도가 무역체제 개혁의 우선 당면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나. 무역경영 손익책임제 실시

상술한 바와 같이, 무역관리제도 개혁의 1단계 기간 중 에 중앙집권의 무역경영권한을 대폭 분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관리제도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1988년부터 2단계의 무역관리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주요 골자는 무역경영 손익책임제이다. 이 제도의 실시 목적은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무역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무역경영권 이양의 속도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동시에 무역공사의 수출손실에 대한 중앙의 재정보조를 줄이며, 또 한편으로는 각 무역

28) 王子先 “世貿組織與中國進出口體制改革”, 國際貿易問題 1997年 第2期 p.13쪽.

공사간에 경쟁의욕을 불러 일으켜서 대외무역을 확대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운영과 보완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도운영

이 제도는 각 지방의 무역공사가 중앙의 대외경제무역부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지표를 정하여 외화 수입 중 지표를 초과한 부분은 무역공사에 유보되고 손실이 발생하면 또한 무역공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외경제무역부, 재정부, 국가계획위원회가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 외화의 중앙상납, 재무 손익의 자기부담 등 3년을 기한으로 하는 세 가지 지표범위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수 각 지방정부에 청부를 준다. 지방정부는 이 청부지표를 다시 당해지방의 무역공사에 하달한다. 그래서 무역공사가 획득한 외화 수입 중 청부지표내의 것은 본래의 유보비율에 따라 분배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80%가 청부단위(지방정부, 지방무역공사)에 귀속되고 20%는 중앙정부에 상납되는 것이다. 특히 기계, 전자상품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품목에서 청부지표를 초과한 부분은 100% 모두 청부단위에 귀속되었다.

#### (2) 보완조치

중국 국무원은 1991년 무역경영 손익책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민폐의 환율과 외환유보비율을 조정 등 일련의 보완조치를 실행하였다.<sup>29)</sup> 우선 공평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대외무역총공사와 지방分公司에 보조해 온 재정보조금을 철폐하고 무역회사의 외환보유비율을 높혀 무역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경영의 손익을 책임지도록 했다. 또한 종전의 지역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된 외환유보비율 폐지하고 전국통일의 외환유보제도를 실시하며 상품별 외환 비율 유보제를 실행했다. 즉 원유와 정유제품 등 특수상품에 대해서만 무역공사의 외환보유비율을 작게 하고 기계, 전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을 고려하여 벌어들인 외환 수입 중 10%는 생산기업에, 5%는 지방정부에, 나머지는 모두 무역공사에 유보하게 했다. 그리고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10%는 생산기업에, 20%는 국가에, 10%는 지방정부에, 나머지는 무역공사에 유보하게

<sup>29)</sup> 魏廷华 『外向型經濟之路』 (广州: 广东旅遊出版社, 1993년), p.56쪽.

했다.

그리고 무역경영 손익책임제의 실행은 종전대로 各省, 自治區, 直轄市和計畫單列市의 지방정부와 무역공사가 중앙으로부터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 외화의 중앙상납 등의 청부지표를 3년 기한으로 정하지 않고 「八·五」계획하의 무역발전수요와 전국의 수출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책정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3년 기한의 청부제도하에서는 많은 무역공사들이 3년간의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하여 장기적인 수출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연유된다.

1994년에는 외환관리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외환유보제와 상납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통일적인 소득세정책이 취해져서 무역경영 손익책임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 다. 관세 법률의 제정

중국정부에게 관세는 대외개방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지 주요 수입원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외개방 이후 대외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중국정부는 관세를 수출입의 조절기능과 국내산업의 보호기능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에 대외무역부 관세국을 관세총국으로 개칭하고 국무원 산하 조직으로 승격시켰다. 또한 1985년에 <수출입관세조례>, 1987년에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을 공포함으로써 중국의 관세제도의 기본 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중국이 관세관련 법률들을 통해 표방하는 관세의 기본원칙은 다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
- ② 원자재의 관세율은 반제품 혹은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함
- ③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기계설비 및 기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의 관세율은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함
- ④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
- ⑤ 국내에서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고 국내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제품은 높은

관세율을 부과함

⑥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면제함

중국은 복합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과 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혜관세율(優惠關稅率)을 적용하고, 관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혜관세율보다도 높은 관세율인 보통관세율을 적용하는 차별적인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수출상품 영세율(零稅率) 원칙에 근거하여 1983년부터 수출상품 세금환급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정된 수출화물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부과하는 증치세(增值稅)<sup>30)</sup>를 돌려주거나 중국내 생산과 유통 중에 부과된 간접세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기관은 세수증감 및 수출량의 증감에 따라 증치세의 환급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1990년대의 개혁

1990년대 개혁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경영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 점에서 괄목할만하다. 특히 무역체제 개혁은 중국의 WTO 가입의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유시장의 경쟁원리를 전제로 하여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외환관리제도의 개혁

1993년 12월 중국인민은행은 ‘외환관리체제의 진일보한 개혁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외환관리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첫째, 1994년 1월 1일 ‘외화결제·매각, 지불에 관한 감정규정’을 발표하여 외화수입·사용계획, 외화유보제도, 상납제도 및 외환사용한도액제도<sup>31)</sup>를 폐지하고 모든 외환에 대해서는 외환지정은행을 통해 매매하도록 하는 의무매각제도<sup>32)</sup>를 도입하였다.

30) 증치세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과정, 유통과정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의 가치 증가분에 과세되는 세목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된다.

31) 외환유보제의 실시에 따라 생긴 일종의 외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한계로서 기업이나 지방 정부 등이 공정한율에 따라 은행에서 외화 현금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지칭한다. 기업은 수출 및 무역외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 현금을 전액 은행에 매각한 후 유보제도의 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추후 외화를 사용할 수 있는 외환 액도를 받게 된다. 외환 액도는 유형의 외화는 아니지만 외화 현금과 함께 외환조절시장에서 유통되었다.

둘째, 중국정부는 은행간 외환거래시장을 개설, 외환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94년 4월 외환거래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선진국의 외환시장을 모델로 하여 상하이에 중국외환거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시장수급에 의한 환율결정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셋째, 통화당국이 고시하는 공정한환율과 외환조절센터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된 시장환율로 이원화되어 있던 환율을 시장환율로 단일화하였다. 환율의 단일화는 공정한환율이 과대평가되어 시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공정한환율을 폐지하고, 외환거래센터의 수급상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시장환율로 단일화하였다.

넷째, 1994년 1월 1일부터 중국내에서 외국인이 사용했던 외화태환권(Foreign Exchange Certificate)의 신규발행을 중지하고, 1995년 1월부터는 FEC의 유통, FEC 기준가격표시 및 결제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96년 6월에는 ‘외자기업에 대한 은행에서의 외화결재, 매각의 실시에 관한 공고’와 ‘외화결재, 매각 및 지불관리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여 경상거래 외화의 매매에 대한 자유화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수출입 등 경상거래에 대한 외환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 나. 대외무역기업의 경영메커니즘 전환

1992년에는 중국 대외무역기업의 경영에 일대 혁신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1992년에 중국 국무원은 <국유제 공업기업 경영기체(mechanism) 전환 조례>를 공포하였다.<sup>32)</sup> 이 조례에 따라 대외경제무역부는 시장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외무역기업의 경영메커니즘 전환방향 10개 항목을 설정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32) 외환수입을 외환지정은행에 매각하면 당일 환율가로 인민폐태환을 해주는 한편, 기업이 외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환매각증명서를 직접은행에 제출하면 이미 매각한 외환 액을 기초로 하여 외환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33) 國務院, 《全民所有制工業企業經營機制轉換條例》 (1992).

〈표 3-1〉 중국 대외무역기업의 경영메커니즘 전환 방향

기업책임자	☞ 국가계획의 집행자	⇨ 독립적 무역경영자 및 세계시장의 경쟁참여자
경영목표	☞ 외화가득 위주 경영	⇨ 외화가득과 효율성을 함께 중시하는 경영
경영전략	☞ 저가상품 의존 시장확대전략	⇨ 품질로 이기는 시장확보 전략
수출시장	☞ 소수시장 의존 형태	⇨ 세계 수출시장의 다변화
외국인투자	☞ 의심과 우려 섞인 관망	⇨ 무역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적극 이용
수출상품 확보	☞ 물적 균형에 따른 상품의 조달	⇨ 무역대리제 전문화로 안정적 상품구입원 확보
마케팅(1)	☞ 근시안적 상품판매 위주	⇨ 장기적 안목에 따른 시장의 확보
마케팅(2)	☞ 고객을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	⇨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자세
기업조직	☞ 분산된 자금자족형 조직	⇨ 점진적으로 기업집단(그룹)화
경영체제및 무역방식	☞ 1기업 1업종의 단일경영체제: 계획에 의한 단일 무역방식	⇨ 1기업 다업종의 복합적 경영체제: 융통성 있고 다양한 무역방식

자료: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鑒』 1993~1994, p.51쪽에서 정리

중국 대외무역기업의 경영메커니즘 전환은 한마디로 경영자율권의 인정이다. 경영자율권의 범위에는 수출입 상품의 결정, 외환의 수입·지출, 자금의 이용, 인사관리와 노무·임금관리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기업들의 국내외영업활동은 크게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대외무역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생산기업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스스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자영권(貿易自營權)을 갖게 되었다.



중국의 무역기업경영메커니즘 전환은 과거 계획경제체제 아래서 비효율적 경영관행을 타파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세계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기업경영체제를 정착시키려는 기업의 내부적 개혁이다. 이 개혁에 따라 1990년대부터 중국에 종합무역상사 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였다. 무역액이 큰 현급(縣級) 이상의 지방정부 관할에 속하는 일부 국유기업과 대·중형 집단소유기업들은 종합무역상사 기능을 부여받았다.

#### 다. 제도적 개혁의 진전

1992년에는 무역관리체제개혁 차원의 제도정비와 법규제정도 많이 이루어졌다. 수출품의 원산지표준제도의 도입, 수출상품관리의 국가규제완화, 수입조절세의 폐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수출상품 규제완화와 수입조절세 폐지는 수출의 자율규제와 수입관세의 인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역자유화의 기초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출품의 원산지규정은 1992년 3월 8일에 국무원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어서 4월 1일에 대외경제무역부가 그 시행조치와 ‘수입성분이 함유된 수출품 원산지표준 주요 제조·가공공정 목록’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수출품의 원산지규정 미비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1992년 12월 29일에는 대외경제무역부에 의해 《수출상품관리 임시 조치법》이 공포되고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수출상품에 대한 국가관리제도가 폐지되고 대부분 상품들은 수출개방품목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중국의 국가계획 무역에 의한 적극제도의 수출은 소극제도로 전환되어 수출자유화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 해 12월 31일에 공포된 《방직품 수출쿼터관리조치법》은 중국의 대중 수출상품인 방직제품의 수출쿼터제를 강화한 것으로서 수출상품관리 규제완화의 한계를 말해준다.

1992년이 중국 대외무역체제개혁의 ‘전환의 해’였다면 1994년은 ‘발전의 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에 무역법이 정비되고 수입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무역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제도가 개선되었다.

중국은 1994년 5월 12일에 무역에 관한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44년간 지속되던 무역에 관한 임시법 체제를 청산하였다. 1994년에는 수입자유화도 진일보하였다. 1993년 말과 1994년 5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478종의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이 해제되고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는 자동등록제로 바뀌었다. 이로써 수입수량제한 상품이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낮아졌다. 그리고 이 시기에 수출 진흥을 위한 중국 수출입신용은행, 수출 상품 발전 기금 및 보험 기금이 설립되었고, 수출세환급제의 미비점도 보완되었다. 수출세환급제의 보완은 199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 제 4 절 외자도입 및 유치정책

### 1. 대외차관 도입 정책의 변화

중국이 여러 가지 형태로 대외차관을 도입한 것은 대외개방이 이루어진 1980년 이후부터이다. 앞의 제2장 개혁개방 이전 시기의 외자 도입 정책에서 진술하듯이 1980년대 이전의 대외차관의 도입은 미미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은 4개 현대화를 국가의 중심적 정책과업으로 삼으면서 일본 및 서유럽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외차관 도입협상을 벌였다. 특히 1977년 중국은 외국으로부터 플랜트도입 등 대외 의존적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이른바 ‘양약진’ (洋躍進)정책의 전개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외차관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대외채무 규모와 도입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외자도입 과정은 대체로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제1단계는 1979~81년의 기간으로 시험적인 외채도입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외자도입 초기에는 직접투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제반여건도 미성숙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차관에 의한 외자도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1981년 趙紫陽은 趙人大 정부활동보고에서 차관도입정책에 대해 ① 경제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자를 이용해야 하지만, 먼저 低利의 조건이 좋은 차관을 이용한다. ② 외자이용의 여부결정에 있어 경제성을 중시한다. ③ 외자의 규모는 辨濟能力 관련설비 정비능력, 선진기술의 소화능력에 따라 결정한다. ④ 장기 저리(長期低利) 차관은 주로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설에 사용한다. ⑤ 국내외의 수

요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외자이용, 기술도입을 보다 자유롭게 한다는 원칙을 발표하여 차관도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총 외채도입규모는 108.7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상업차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둘째, 제2단계는 1982~85년의 기간으로서 외자도입 방법과 도입원이 다양화되었던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종래의 정부차관과 국제금융조직 차관 외에도 상업은행 차관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채권발행도 시작되었다. 즉,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IMF, 세계은행, ADB 등에 가입하였고, 1982년 1월에는 중국국제신탁투자회사가 동경시장에서 100억 엔을 기채한 것을 필두로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4년 11월에는 중국은행이 200억 엔 상당의 외화표시 공채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외채 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1985년 말에는 158억 달러에 달하였다.

셋째, 제3단계는 1986~88년의 기간으로서 외채도입 창구의 개방과 함께 외채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이다. 1985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환수지 균형의 무를 강화하고, 아울러 투자 업종을 제조업 투자로 제한하면서 직접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 반면 종래의 중국은행과 CITIC로 제한되었던 대외차관도입창구가 연해지구 성(省), 시(市)의 국제신탁투자회사로까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자금조달 수단도 더욱 다양해져, 차관도입이 크게 증가하여 1988년 말에는 중국의 외채잔고가 400억 달러를 넘어서 외채위기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넷째, 제4단계는 1989~91년의 기간으로서 엄격한 외채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의 외채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1987년 8월 ‘對外債務統計監視暫定規定’을 제정하여 중국의 금융기관, 기업, 지방정부 등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1989년 2월에는 國務院이 ‘국제상업차관 관리강화 문제에 대한 통달’을 발표하여 상업차관의 도입창구를 종전의 170여 개에서 중국은행 등 10개 창구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1990년부터는 외채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외채상환금제도를 도입하였다.

## 2.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 가. 1980년대 중반 이전의 정책

외국인투자는 대외차관과 달리 외채의 원금상환 및 금리부담이 없고 오히려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 가운데서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고용확대효과와 기술이전효과가 크고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을 수반한다. 이것은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대한 효과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이 대외개방정책을 결정하자 국무원이 서둘러 1979년7월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공포한 것도 그러한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이 법은 중국과 외국의 공동투자에 의한 기업설립과 경영을 규정하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본법이다. 그러나 국내외 사정으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곧바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중국 외자도입정책의 중심이 외국인투자유치로 옮겨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중국은 1985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환경의 정비에 힘썼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관련된 법규가 대대적으로 정비된 시기도 바로 1985년과 1986년이였다.

1979년에 공포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중국과 외국의 투자자가 중국에서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할 경우의 투자형태, 투자비율, 경영방식, 송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법은 원칙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에는 시간이 걸렸다. 우선 필요한 것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보장 장치였다. 그리하여 중국은 1982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새 헌법에 외국기업의 중국투자 허용조항(18조)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중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헌법의 보장까지 받게 된 것이다. 1983년 4월에 국무원은 합자기업에 대한 6개항의 우대조치 발표에 이어 9월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를 공포하고, 1984년에는 대외개방지역의 확대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규정도 내놓았다.

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적 보장과 우대정책에 힘입어 1985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크게 늘었다. 특히 1984년의 중국FDI계약건수는 1979~1984년의 총 계약건수의 1.3배나 되었고 1985년에는 1979년~1984년의 총 계약 건수와 거의 맞먹는 3만 건을 넘었다. FDI 계약액의 전년대비 증가율도 1984년과 1985년에 각각 53.2%, 124.2%

에 달하였다.

## 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정책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는 여전히 문제가 적지 않았다. 특히 1985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수지균형 의무가 강화되고 투자업종과 투자기간이 제한되었으며, 비싼 토지사용료와 임금에 관한 규제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고 다양하지 못한 외국인직접투자 방식도 외자의 중국유입을 막았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1986년에 외국인직접투자의 계약은 급격히 줄었다.<sup>34)</sup>

그러자 국무원은 문제해결에 나섰다. 1986년에 ‘중외합자기업의 외환수지균형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수지균형 의무가 완화되었고,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도 투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고쳐졌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장려 규정’이 만들어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강화되는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다양화도 이루어졌다. 1986년에 외국인 단독투자기업의 기본법인 《외자기업법》이 공포되고 1988년에는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공포되어 이른바 “3자기업”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1990년대에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제도를 정비하였다. 1990년 4월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으로 외국인 이사장(중국어:董事長) 취임이 가능해지고, 기업자산의 무상몰수제도와 합자기간의 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 5월에는 토지 관련법규의 제정을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유상양도와 외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부동산개발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12월에 <외자기업법 시행조례>공포로 중국은 독자기업의 적극적 유치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고용효과나 기술이전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독자기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통일도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에 의해 1991년 7월 1일부터 3자기업의 소득세율과 감면제도가 통일되었다. 그리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제도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기

<sup>34)</sup> 1986년 외국인직접투자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의 감소율은 각각 -51.3%와 -52.2% 이었다.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 1987년 이후 판 참조.

업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중국어 : 增值稅), 소비세, 영업세 등을 납부하고 면세(중국어 : 免稅), 공제(중국어 : 抵稅) 및 환급(중국어 : 退稅) 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의 중심이 외자유치에서 세수(중국어 : 稅收)의 확보로 옮겨진 것을 뜻한다.

1995년부터 실시된 부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리도 괄목할만하다. 국무원은 성과 시의 정부에 부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하였다. 중국에서 부실기업은 “3무(三無)기업”으로 불린다. “3무기업”이란 첫째, 자본금이 불입되지 않은 기업; 둘째, 회사설립등기를 마치고도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 셋째,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한 기간 안에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 다. 외국인투자의 형태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직접투자와 기타투자로 나눈다.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외국인의 투자비율, 기업소유권의 참여 및 사업 참여 형식에 따라 닷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리고 기타투자는 외국인의 중국기업주식 보유와 리스(lease)형태의 간접투자와 위탁가공 무역으로 나누어진다.

### (1) 직접투자 형태

합자기업: 합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가가 현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설립한회사로서, 이윤은 출자비율에 의거하여 분배하는 기업 형태이다. 외국인은 중국의 자연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중국의 자연인은 합자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 합자기업설립을 목적으로 중국측 파트너를 선정할 때는 중국의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외자측 출자비율에 대해 25%이상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투자기간은 원칙적으로 평균 10년 내지 30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4년 1월 15일에 개정된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대한 50년,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더 연장될 수도 있다.<sup>35)</sup>

외자기업: 외자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경영상 모든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며 중국정부에 각종 세금과 토지사용료를 지불한다. 외자기업은 중국법률이 법인조건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 때에는 법에 의하여 중국 법인의 자격을 취득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에 대해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법한 권리와 이익이 보호된다.<sup>36)</sup>고 규정하고 국가는 외자기업을 국유화하거나, 또는 수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합작기업: 합작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인 파트너가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쌍방의 협의 하에 설립된 회사로써 설립조건 권리와 의무 및 이익분배 방식 등이 상호 협의 하에 정해진다. 합작기업은 합작계약상 출자방식, 위험분담방식, 이윤배분방식, 경영관리방식 등 모든 기업경영 사항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합작쌍방의 약정을 통하여 공유, 혹은 부분적으로 분별소유 부분 공유할 수도 있다. 합작기업이 경영으로 누적된 재산은 합작쌍방의 공유로 귀속된다.<sup>37)</sup> 법인 자격을 취득한 합작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이나 제공한 합작조건으로 형성된 지분은 일반적으로 등록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한다.

주식제 기업: 주식제(중국어: 股份制)기업은 철저한 자본주의 기업형태로서 1992년에 획기적인 기업경영메커니즘의 전환에 따라 중국에 처음 도입되었다. 중국 정부는 '주식제기업 시범방법'을 제정하여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및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자주식의 출자를 할 수 있게 하였다.<sup>38)</sup> 1995년에는 외국인투자자 발기인 주주가 한 명만 있어도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란 자본금이 3천만 위엔 이상이고 중국 및 외국의 주주가 공동으로 주식을 보유하되 외국주주 보유주식이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sup>39)</sup> 주식제 기업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그 기업의 주식상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식의 상장은 자본금이 5천만 위엔 이상이고 설립 후 3년간 연속 흑자이며 중대한 위법사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요건은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 현지 법인이 중국 자본시장에

35) 「합작기업법」 제1조: 중국은 국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회사·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36) 「외자기업법」 제4조.

37) 「합작기업법 실시세칙」 제51조.

38) 「股份制企業示範辦法」(1992.5.15 공포 및 시행) 4 항.

39) 「關於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設立一部問題的暫行規定」(1995.1.10 공포 및 시행) 제2조.



서 주식 발행을 통해 직접금융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합작개발: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로서 합작개발은 중국이 비교적 장기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 첫 번째 형태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이 특정의 신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합작경영형태의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쌍방은 신설되는 합작기업에 신제품의 개발에 필요한 설비와 부품, 원료 등의 제공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연구협력과 특히 외국기업에 의한 신기술과 설비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합작개발의 두 번째 형태는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리스크가 큰 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중국정부가 별도 규정을 두고 추진하는 해양석유를 비롯한 자원개발이다.<sup>40)</sup> 이 경우에는 중국에 합작개발을 위한 합작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중국해양석유총공사와 외국의 투자기업이 연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원개발을 공동 관리한다.

## (2) 간접투자 형태

대외발행주식: 중국의 기업들은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 홍콩 및 외국의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자본을 직접 조달할 수 있다. 중국기업의 대외발행주식이란 이러한 주식을 일컫는다. 중국기업들의 주식은 알파벳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발행되어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인민폐로 거래되는 주식을 A주식(인민폐 일반주식)과 B주식(인민폐 특종주식)이라고 한다. 중국기업이나 중국의 자본을 배경으로 한 기업이 홍콩에서 발행하는 주식은 H주식이라고 하고 흔히 홍콩우구로 불린다. 홍콩우구의 가격등락은 중국경제의 지표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런던, 뉴욕, 싱가포르, 도쿄 등 증권시장에 직접 상장되거나 주식예탁증서(DR) 형식으로 상장된 중국기업들의 주식은 각기 그 도시의 이니셜을 따라 L주식, N주식, S주식, T주식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들 주식은 모두 외국인투자자들의 중국기업에 대한 간접투자의 대상이다.

국제리스: 외국인투자자들의 중국에 대한 국제리스는 OEM(original equipment

40) 중국은 ‘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開發探海洋石油資源條例’를 제정하여 해양석유와 그 밖의 자원의 합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manufacturing)이나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주문과 함께 중국기업에 생산설비를 임대하는 방법과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3) 위탁가공무역 형태:

중국의 외국인기타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위탁가공무역이다. 위탁가공무역은 외국의 위탁자가 원재료와 주요 재료를 제공하고 중국은 임가공비와 보충원료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는 조립가공무역과 보상무역이 있다. 중국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원료, 견본 및 부품 3가지와 보상무역을 합쳐서 “3래1보(三來一補)” 라고 한다.

첫째, 조립가공무역: 임가공위탁생산인 조립가공무역은 보상무역과 함께 1979년 중국이 대외개방과 동시에 홍콩 기업인들에게 허용한 최초의 외국인투자방식이다. 이 투자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위탁원료가공: 수탁가공(受託加工)이라고도 한다. 외국기업이 중국의 공장에 원재료, 부품 또는 필요시 기계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가공된 제품을 납품받는 방식의 가공무역이다.

견본가공: 보통 주문가공(注文加工)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구매자가 제공하는 견본이나 주문서에 따라 상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형태이다.

부품조립: 외국 구매자가 제공하는 부품을 조립하여 거기에 지정된 외국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다.

둘째, 보상무역: 보상무역은 외국투자자가 자금이나 기술, 설비, 원자재 등을 생산자에게 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정한 기간이 지닌 뒤에 상환 받는 외국인투자의 한 방법이다. 상환은 직접 자금이나 기술, 설비, 원자재 등의 제공자에 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 제3차에게 할 수도 있다. 대가의 상환방법을 분할상환과 현물상환이 있다. 분할상환은 보상무역의 상환을 모두 제공된 기술과 설비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상환하지 않고 일부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현물상환은 기술과 설비제공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외국인투자자가 요구하는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로 보상하는 방법이다. 중국은 주로 현물상환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의 보상무역에 대해 투자금액과 기간별로 관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다. 보통 3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는 상무부의 허가를 요하며 그 이하는 지방정부에 허가권이 위임되었다. 그리고 보상무역 계약 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지방의 허가기관이 다르다. 그 기간이 장기이면 성급(省級) 지방정부, 계획단열시 및 경제특구가 허가권을 갖고 중단기의 허가권은 하급 지방정부에 위임된다.

## 제 5 절 개혁개방 이후의 환율제도 변화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으로 무역액이 커짐에 따라 1981년부터 무역거래와 무역외 거래에 각기 다른 환율을 적용하는 이중고정환율제를 도입하였다. 즉,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를 위해서 무역거래에는 달러당 2.8위안으로 고정된 내부결제 환율을 적용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나 관광 등에 대해서는 달러당 1.5위안의 공정(公定)환율(중국어:官方牌價)을 적용하게 한 것이다. 이 환율제도 도입 후 미국 등 교역상대국들과 IMF는 중국의 내부결제환율이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철폐를 요구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이중고정환율제도가 도입된 후에 공정한 환율은 계속 상승하여 내부결제환율과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sup>41)</sup> 이러한 이유로 중국정부는 1985년 1월에 내부결제환율을 폐지하여 공정한 환율만을 썼다.

그러나 중국의 계획경제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외환거래의 증가는 새로운 이중환율제도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87년부터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공식환율이 적용되고, 계획 외의 기업간 외환거래는 외환조정센터에서 외환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조절환율이 적용되었다.<sup>42)</sup> 이 환율제도에서도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평균환율은 1985년 달러당 약 2.9위안에서 1993년에 약 5.8위안으로 올랐다. 이중고정환율제도는 1994년 1월 1일부터 단일관리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폐지되었다.

단일관리변동환율제도는 중국정부가 외환시장의 선진화와 무역수지개선을 명분으로 하여 기업간 시장조절환율을 폐지하고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공식환율만을 적용하게 한 것이다. 이 환율제도의 시행과 함께 1994년 인민폐의 달러당 평균환율은

41) 달러당 평균환율(중간가)은 1981년 1.7051위안에서 1984년에 2.3270위안으로 상승하였다.

42) 무역거래의 약 80%는 시장조절환율의 적용을 받았다.

5.7위안에서 8.7위안으로 평가절하 되었다.

현행 단일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 인민폐의 환율은 일정한 상하 변동폭의 범위 안에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인민은행은 매일 기준환율을 고시하는데, 그것은 전일의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인민폐의 달러 매입과 매도 중간가격을 근거로 한다. 그리고 각 외환취급 지정 은행들은 당일 중국인민은행의 기준 환율과 환율 변동 폭의 범위 안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외환의 매도와 매입 환율을 정하게 된다.

중국의 현행 환율제도는 명칭 상 변동환율제라고는 하지만 상하 변동폭이 각각 0.2~0.3%에 불과하다. 인민폐 환율은 미국 달러화에 페그(peg)되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줄곧 달러당 8.3위안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민폐는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상당수준 저평가되어 있다. 그 동안 중국은 인민폐의 평가절상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중국은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 공급량과 금리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민폐의 대외적 가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에서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국내 금융부문을 대외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제규모와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도 완전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대외거래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현재의 달러 페그제를 복수통화바스켓제(multi-currency basket system)로 바꾸고 환율의 변동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완전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고 있다.

## 제 4 장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의 경제 · 무역 정책

### 제 1 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 1. 가입 협상의 경과

중국은 1986년에 회원국으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GATT에 가입할 것을 신청했다. 이후 16년이 지나서야 회원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중국은 미국·일본·EU와 양국간 협상과 함께 다자간 협상을 단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한편 가입 협상의 관건이었던 미국과의 양국간 협상은 천안문 사건(1989년 6월), 베오그라드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1999년 5월)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1999년 11월 북경에서 이루어진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일본과는 1997년 9월에 상품 시장 접근에 대해, 1999년 7월에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협상을 마무리하고 중·일 양국간 협상은 타결된다. 이어서 EU도 2000년 5월에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양국간 협상을 거의 마무리했다.

참고로 중국의 WTO 가입 주요일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표 4-1〉 중국의 WTO 가입 주요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950년 3일	중국 ‘중화민국’ 명의로 GATT 탈퇴
1986년 7일	중국, GATT 가입 신청
1990년 1일	대만, GATT 가입 신청
1995년 6월	중국, WTO 옵저버 자격 획득

1997년 8월	중국의 WTO 가입 위한 한국, 중국 양자회담 타결
1999년 4월	주룽지 중국 총리 미국 방문. WTO 가입에 대한 미국지지 확인
11월	중국 미국, WTO 가입 양자회담 타결
2001년 1월	중국 가입심사를 위한 WTO 중국작업반 15차 회의,결렬
6월9일	신화사, 중국 미국 WTO 협상 합의 보도
6월28일~7월4일	WTO 중국작업반 16차 회의 (스위스 제네바)
11월 9일~13일	WTO 총회, 중국 가입안 상정(카타르 도하)

자료: 『중국이 WTO를 만났다?』 최성일 2002

## 2. 주요 양국간 협상

### 가. 미국과의 협상

미국과의 협상은 1999년 11월 북경에서 바세프스키 USTR대표, 스파링 대통령 보좌관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협상단과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龍永圖 부부장을 중심으로 한 중국 대표단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여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양자회담을 타결하고서도 중국의 개방을 확대시키고 중국내 산업구조를 서구식 시장경제체제로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을 저지시켜왔다. 그 동안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이견을 보여 왔던 분야는 농업보조금 문제인데 중국은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하여 농민들에게 생산가의 1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은 중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5%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01년 6월 4일 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WTO 가입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한도를 농업총생산액의 8.5%로 합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 나. 일본과의 협상

일본은 처음부터 중국이 가입하는 것을 지원해 왔다. 그래서 시장 접근 개선을 위한 양국간 협상도 다른 나라에 앞서 실시되었다. 1997년 9월 하시모토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상품(관세, 수입 제한 조치, 기준 인증)의 시장 접근에 대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유통 금융 전기 통신 건설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1999년 7월 오부치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여 중국으로부터 양보안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러 양국간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발표했다.

#### 다. EU와의 협상

미국과의 합의에 이어서 2000년 3월 라미 유럽 위원이 중국을 방문하여 石廣生 대외 무역경제협력부장과 각료급 협의를 했으며, 朱鎔基 총리와의 회담을 했으나, 금융 전기 통신의 자유화에 관해 쌍방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2개월 후인 5월 라미 위원이 중국을 재차 방문하여 각료급 협의를 실시하고, 금융·전기 통신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와 관세 인하를 약속받음으로써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 3. 양국간 시장 접근의 내용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간 협상의 내용은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 가. 물건에 관한 시장 접근

### (1) 수입 제한 조치

중국은 1998년 7월 WP에서 수입 수량 할당, 수입 허가, 공개 입찰과 같은 수입 수량 제한을 2005년까지 철폐한다고 하고, 경과 기간을 제시한 비관세 조치(NTM) 리스트를 제출했다. 예컨대 자동차의 수입 수량 제한은 2005년까지 폐지하고, 그 동안 수입 할당액은 첫 해 60억 달러에서 매년 15%씩 확대한다. 제한 대상 품목도 1993년 당시 1,247개 품목에서 2000년 9월에는 383개 품목으로 감소했다.

### (2) 기준 인증: TBT

1997년 중일 협의에서 중국은 기준 인증 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국산품과 수입품에 다른 법령기준 제도를 적용해 온 것에 대해 가입 시까지 이들 법령 기준을 단일화하는 등 내외 차별성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약속했다. 특히 일본 산업계로부터 강하게 요구받은 화학제품의 수입등록제도(국제 규범에 합치한 법률 제정), 가전제품의 중복되는 두 가지 마크(長城 마크와 CCIB 마크의 취득 절차의 간소화), 자동차의 기준 인증(수입차와 국산차의 법령 기준 통일), 보일러 압력 용기의 안전 품질 허가(내외 무차별 확보, 국제 기준 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가입 시까지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 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시장 접근

서비스 무역은 물건의 무역에서 양허표와 유사한 약속표 제도가 있어, 양국간 협상에서 약속표에 기재한 한도에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실시할 의미를 지게 된다. 서비스 무역에 관해,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의욕적인 약속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회원국의 관심이다. 물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 가장 유리한 약속을 이끌어낸 국가가 받을 편익은 최혜국 대우로 다른 회원국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표 4-2〉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과 중국의 약속

	현황	약속
은행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 은행에 의한 중국 기업 또는 중국인 개인을 상대로 하는 위엔 업무의 금지.	▶ 5년 이내에 외국계 은행에 완전한 시장 접근 인가. ▶ 외국 은행은 가입 후 2년 내에 중국 기업을 상대로, 5년 이내에 중국인 개인을 상대로 위엔 업무 인가.
보험	상해와 광주만 외국 보험 회사의 영업 인가.	▶ 합판 생명 보험 회사에 대한 외국측 출자 비율을 50%까지 인가. ▶ 가입 2년 이내에 외국측 잔액 출자에 의한 지점 개설 인가. ▶ 유럽의 보험 회사 7개 사에 신규 참여 인가.
증권	외국 증권 회사에 중국 국내 업무 금지.	▶ 외자 증권 회사에 합판으로 수탁 판매 기업 설립 인가.
전기 통신	외국 기업에 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 분야에 대한 외국 투자 금지.	▶ 휴대용 소형 무선 호출기 (pocket bell) 등 부가 가치 서비스의 서비스에는 외자측 출자 비율을 가입 2년 이내에 50%까지 인가. ▶ 이동 전화에 외국측 출자 비율을 가입 3년 이내에 50%까지 인가. ▶ 국내 및 국제 전화는 외국측 출자 비율을 가입 6년 이내에 49%까지 인가. ▶ 인터넷이나 통신 위성 사업에 외국 기업의 참여 인가.(스케줄 미정)
소매 도매	외자의 소매업에 대한 진출지역, 기업수를 제한, 도매에 대한 투자를 금지.	▶ 가입 3년 이내에 모든 규제 철폐.

자료: 『중국학연구』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대외무역정책의 경향” 2003

#### 4. WTO가입 영향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설립협정이 발효된 WTO는 세계 각국간의 자유무역과 공정 경쟁을 추구하는 다자간 국제무역기구이다. WTO는 공산품 및 농산품은 물론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구제를 포괄하며, 또한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SB)와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무역질서의 감시자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에 중국이 가입한 후에 중국의 경제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중국 사회 전체의 이념과 문화·정치 등의 영역에서 체제변동의 충격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WTO 가입에 따라 중국 상품은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고정자본의 투자에 있어서도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협정 결과에 따라 수년 내로 은행 증권 외환시장 등 전면 개방되면 국제 금융파동과 같은 국제경제의 파동이 곧바로 중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계심도 표출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적 전통에 따른 국가 고용의 공간이 위축되면서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이 활성화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 및 실업문제 또한 중국이 감당하기 힘든 과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sup>4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은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비시장경제’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명실상부하게 경제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절대 이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 신인도의 향상에 따라 외자 유치에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조정할 수 있으며, 중국의 내수 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중국도 해외시장 개척에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최혜국대우(MFN)를 획득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꺾할 수 있고, 개도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도 향유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된다.

43) 余永定, 鄭秉文 主編, 『中國入世研究報告: 進入WTO的中國產業』.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1年) pp.4-5쪽.



## 제 2 절 WTO 가입 이후 대내 경제 발전 계획

중국은 2002년 11월 16일 개최된 16차 전국공산당대회에서 黨 총서기에 후진타오(胡锦涛)를 결정하였다. 중국의 새 지도자인 후진타오는 92년에 등소평에 의해 제4세대 지도자로 선정되어 제2인자로서 지도자 수업을 받아 왔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뒤쳐지고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서부지역의 성장을 이끌면서 민족적, 사회적 소요 사태를 훌륭하게 진정시킨 경험도 가지고 있다.

### 1. 제 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제10차 5개년 계획은 21 세기에 시작된 계획이며 후진타오가 취임하면서 진행되는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높다. 이 계획 기간에는 그동안 외면적 성장으로 달성된 성장의 부분적인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집약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지도 방침은 ①내수의 지속적인 확대와 효율의 증대, ②구조조정의 견지와 국제경쟁력 제고, ③발전의 동력으로 개혁·개방과 과학기술의 혁신, ④도시와 농촌 및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 ⑤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 견지 등에 두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7%로 하고 제10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05년 GDP를 2000년 가격기준으로 12.5조 위안, 1인당 GNP는 9,400 위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이다. 따라서 2005년에는 GDP에서 과학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획 세운 당시의 4%에서 6%까지 제고 시킬 계획이며 전체 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산업의 비율도 9%에서 16%로, 전체공업제품에서 차지하는 첨단산업제품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기로 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첨단산업 국가육성사업을 전개 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12개 프로젝트 및 20개 중점사업이 선정되었다.<sup>44)</sup>

44) 중국정부는 이들 분야에 경제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첨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2. 제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2006년에 개최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 회의에서 제 11차 5개년 계획을 세웠다. 11차 5개년 계획은 신 농촌 건설, 경제구조 조정 및 성장방식 전환, 협조적 지역 발전 구축,<sup>45)</sup> 독자적 혁신 능력 강화,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조화로운 사회 건설 노력 5항목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3〉 11차 5개년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신 농촌 건설	①도시와 농촌의 동시발전 추진. ②농업 생산력 발전. ③농업의 산업화 연계 확대 ④농촌 공공시설 강화. ⑤신형 농민 육성. ⑥도농 연계강화. ⑦국가 재정투입 확대. ⑧토지계약 이용권 이양 허용.
경제구조 조정 및 성장방식 전환	①과학기술 발전 인재 육성 전략 실시. ②에너지 공급 체계 강화. ③구조조정 강화. ④서비스업 발전. ⑤자원절약 환경 친화적 사회 건설. ⑥예방위주의 생태보호 강화.
협조적 지역발전 구축	①서부대개발 촉진. ②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 ③중부지구 발전 촉진. ④동부지구의 우선적 발전 장려. ⑤구 혁명근거지 소수민족지역변경지역 투자 확대. ⑥대중도시와 소도시의 협조적 발전을 통해 안정적 도시화 추진.
독자적 혁신능력 강화	①독자 개발능력 제고. ②선도 산업 및 독자 브랜드 육성. ③중요 기술 장비 연구개발 설계 핵심부품 개발 강화.
개혁 심화	①행정관리체제 개혁 심화. ②국유기업의 지주회사화, 기업집단 완비, 국유자산관리체제 강화. ③독점성 산업 개혁 강화. ④재정 및 세수체제

45)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 대개발, 동북 진흥, 중부 괘기, 동부 우선’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특히 4대 경제구, 즉 장강삼각주지역(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경진기지역(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동북지역(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성유지역(중경시, 사천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통합 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발전 속도가 빠른 주장삼각주지역을 제외했다.)

및 개방 확대	개혁 완비. ⑤더 많은 분야에서 국제 경제기술협력 및 경쟁 참여. ⑥외자 이용의 질 제고: 외자이용을 통해 외국의 선진기술, 관리경험, 인재 도입 확대. ⑦외자 이용 방식의 다양화: 외자의 국내기업 개조 참여 유도·규범화. ⑧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조화로운 사회건설 노력	①조화로운 사회 추진: 인구조절 사업, 양로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취업 확대, 분배조정, 국민 건강 수준 제고 등. ②민주정치 건설 강화. ③법제 건설 강화. ④인민대표회의 다당합작제. 소수민족자치 등 완비. ⑤문화건설 강화.

자료: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회의의 주요 결정내용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

### 3. 서부대개발의 기본 전략과 추진 내용

#### 가. 기본 전략

2000년 3월에 개최된 제9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중국의 서부대개발은 동서부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내수 진작을 통한 현대화실현 그리고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고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에 비해 낙후된 서부지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정치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0년 4월에 국무원산하에 직속기구로 ‘西部大開發 領導小組 및 辦公室’<sup>46)</sup>을 설치하였고, 2001년 3월 제9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는 서부대개발을 제 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의 중심사업으로 확정하는 등 대내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1개 직할시(重慶)과 6개성(四川省, 貴州省, 雲南省, 陝西省, 甘肅省, 青海省) 그리고 5개 소수민족 자치구(西藏自治區, 新疆維吾爾自治區, 寧夏回族自治區, 內蒙古自治區, 廣西壯族自治區) 등 12개 성·시·자치구를 서부대개발 지역으로 지

46) 중국은 2000년 3월 16일 국무원 산하에 ‘西部大開發 領導小組 및 辦公室’을 정식 설립하고 업무를 개시하고 있다. 西部大開發 領導小組의 조장은 周鎔基이며 國家發展計劃委 주임, 재정부장, 인민은행장, 교통부장, 농업부장, 철도부장 등 20개 부처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辦公室은 국가발전계획위 曾培炎이 주임을 겸직하고 있으며 산하조직에는 정책기획, 환경, 경제사회발전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해 놓고,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3단계 국가발전 계획<sup>47)</sup>과 연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2050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서부대개발을 단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진하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푸트를 통해 도입하겠다는 전략도 가지고 있다.

## 나. 장기발전 프로그램으로 발전 추진

### (1) 단계적 발전 추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서부대개발은 장기발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서부대개발을 50년 동안에 걸친 장기발전 계획과 아래의 표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다.

〈표 4-4〉 중국서부지역의 3단계발전 전략

단계	중점 추진사항
개발초기 단계(2000-2005)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 기초건설 가속화
대규모개발 단계(2006-2015)	서부지역 자체개발 능력제고
전면발전 단계(2016-2050)	서부지역의 도시화, 국제화 수준 제고

자료: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망』 국제무역경영 연구원 2003

### (2) 서부대개발의 추진 내용

1999년 12월 전국계획공작회의에서 국가발전계획위원회 曾培炎 주임이 서부개발과 관련하여 언급한 ① 인프라 시설 확충 등 기초시설 건설 ② 생태건설과 환경보호 ③ 농업기초 공고화 및 강화: 첫째, 농업부문과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이다. 둘째, 특색 있는 농업의 발전이다. 셋째, 농업의 산업화 경영이다. 넷째, 빈곤 농촌의 지원이다.

<sup>47)</sup> 중국은 1단계인 温飽단계와 2단계인 小康단계가 80-90년대에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평가하고 3단계인 现代化 단계를 2000년대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부대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④ 적극적인 산업 구조 조정: 첫째, 전통산업구조의 재편이다. 둘째, 자원개발과 이용이다. 셋째,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이다. 넷째, 관광 등 서비스업 발전의 추진이다.

#### 4. 동북3성 개발계획

중국에서는 2003년 3월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4세대 지도부가 정치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이들 4세대 지도부가 가장관심을 보인 지역은 동북3성 랴오닝성(遼寧省)·지린성(吉林省)·흑룡강성(黑龍江省)이다. 이에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동북지역 순방을 마치고 동북3성 공업기지진흥을 서부대개발사업과 함께 양대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였으며 2003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기 3중전회에서 동북3성 개발계획이 결정된 바 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3년 11월에 610억 위안(74억 달러)에 이르는 100개의 동북3성 재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 중 랴오닝성 투자가 52건으로 투자액의 72.5%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흑룡강성과 지린성이 각각 37건, 11건의 투자계획을 확정하였다. 동북3성 간의 경제규모와 발전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랴오닝성이 중심이 되고 여타 성의 주요 도시가 경제기능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랴오닝성의 중공업도시인 선양은 기존의 공업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여기에 금융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지린성의 다롄이 항만시설 확충을 통해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구도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흑룡강성은 개발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동북3성의 개발계획이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전통산업기반을 가진 국유기업의 개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낙후된 국유기업의 산업구조와 설비를 고도화하고 첨단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이 새롭게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도 기술개발과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2개의 국가 연구소와 8개의 기업 R&D센터를 건립할 예정을 있다.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동북지역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통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 지침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모회사 및 자회사 체제 구축, 주식제, 국유자산의 합리적 유통 시스템 구축,

투자주체 다원화 및 법인 설립을 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다.

둘째, 외자와 민자의 참여유도, 그룹화 추진, 주력업종 육성, 파산조건 제정 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석유, 철강, 자동차, 선박 생산기지 건설, 석유화학, 기술설비, 운수용 엔진에 대한 외자유치, 군(軍) 소유 기업의 기술 개혁, 시장중심의 제품구조 고도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넷째,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국유기업 인사제도 개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제 3 절 대외무역 발전 상황

WTO에 가입한 이후 첫해인 2002년에도 중국의 대외무역은 고속 성장을 기록하였다. 무역수출입 총액은 6,208억 달러로 전년대비 21.8%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 중 수출은 3,256억 달러, 수입은 2,952억 달러로 전년대비 성장률은 각각 22.3%와 21.2%를 보이고 있다. 국가 및 지역별로는 대미국 수출이 700억 달러 (28.9%증가) 대일본 수출은 484억 달러 (7.8% 증가), 대한민국 수출은 155억 달러(23.8% 증가), 대러시아 수출은 35억 달러(29.9% 증가) 등 전체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중, 수출 34.7% 증가(4,385억 달러), 수입 39.9% 증가(4,128억 달러), 수출증가율보다 더 빠른 수입의 증가세로 경상수지 흑자 폭의 감소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IT제품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31% 이상, 수출 증가액의 50% 이상 점유되었고 기계전자제품의 무역액은 총 무역의 53%, 동 제품수출은 총 수출의 55% 차지되었다.

2004년 12월 9일, 중국 해관총서는 11월까지 대외무역 수출입 상황을 발표하였다. 11월까지 대외수출입 총액은 10383.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6.5% 증가하였고 수입·수출 총액이 각각 50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그 중 수출은 5296.1억 달러, 수입은 5087.7억 달러로 각각 35.7%, 37.3% 증가하였다. 누계 실현 무역흑자는 208.4억 달러이다. 그리고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쌍방 무역에서 EU는 계속해서 제 1대 무역파트너 지위를 지켰는데 쌍방 무역 총액은 1592.9억 달러로 34.7% 증가하였고 수출입 총액 가운데에서 15.3%를 차지하였다. 중미 쌍방 무역 총액은 1527.6억 달러로 34.3% 증가하였다. 일본간의 쌍방 무역 총액은 1515억 달러로 26.4% 증가하였다. 그 밖에 아세안간

의 쌍방 무역 발전 추세도 좋은 편이어서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쌍방 무역 총액은 949.8억 달러로 36.2% 증가하였다. 그 외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등 기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쌍방 무역 총액 증가폭이 40%를 초과하였는데 언급한 3개 무역 파트너에 대한 증가폭은 각각 55.6%, 52%, 44.7%이다.

2006년 1월 11일 해관총서는 2005년 중국 대외무역 상황에 대한 공개하였다. 해관통계에 따르면 대외무역은 2004년 처음으로 1만억달러를 돌파한 후 2005년에 14221.2억 달러에 달하여 지난해보다 23.2% 늘어났다. 그중 수출은 7620억 달러로서 28.4% 늘어났으며 수입은 6601.2억 달러로서 17.6% 늘어났다. 해관통계에 따르면 2005년 일반무역 수출입은 5948.1억 달러로서 21% 장성하였다. 그중 수출은 3150.9억 달러로서 29.3% 장성하였으며 수입은 2797.2억 달러로서 12.7% 장성하였다. 같은 시기에 가공무역 수출입은 6905.1억 달러로서 25.3% 장성하였다. 그중 수출은 4164.8억 달러로서 27% 장성하였으며 수입은 2740.3억 달러로서 23.6% 장성하였다. 기전과 하이테크제품 수입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초급 제품 수입도 빠르게 증가. 전반 3분기 기전 제품과 하이테크제품 수입액은 각 2485.5억불, 1396.4억불로 12.1%, 19.8% 증가하였다. 초급 제품 수입액은 1075.6억불로 26% 증가하였고, 이중, 원유 수입량이 겨우 4% 증가하였으나, 가격이 인상되어 수입액은 44.7% 증가하였다. 철광 수입량 1.99억톤, 수입액 134.4억불로 각 31.7%, 42.8% 증가하였다.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수출 증가가 강세이나 수입을 완만하였다. 전반 3분기, EU는 여전히 중국 최대의 무역 파트너로, 양국 무역액이 1577.9억불로 23.3% 증가하였다. 이중 중국의 대EU 수출은 1034억불로 37.2% 증가하였고, EU로부터의 수입은 543.8억불로 겨우 3.4% 증가하였다. 중일 무역액은 1345.5억불로 10.5% 증가하였다. 이중 중국의 대일 수출은 617.7억불로 18.8% 증가하였고, 수입은 727.8억불로 4.3% 증가하였다. 미국, 홍콩, EU는 중국의 주요 흑자 지역으로, 흑자액이 각 811.7억불, 764.1억불, 490.2억불이었다. 대만, 한국, ASEAN, 일본은 중국의 주요 적자 지역으로, 적자액이 각 410.6억불, 301.1억불, 135.2억불, 110.2억불이었다.

중국 세관총서는 2006년 11월 8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0월에 중국 월간 무역흑자가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238.3억 달러에 달하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무역흑자가 누계 1336.2억 달러에 달한다. 세관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중국 수출입 총액은 14249.5억 달러이고, 같은 기간에 비해 24.1% 늘어났다. 그



중 수출 7792.85억 달러, 수입 6456.65억 달러이며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6.8%와 20.9% 늘어났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07년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2조 1738억 달러로 전년대비 4134억 달러가 늘어난 23.5% 증가를 보였으며, 연도별 수출입 규모로는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었다. 이중 수출액은 1조 2180억 달러로 25.7% 증가, 수입액은 9558억 달러로 20.8% 증가했다. 2007년 무역 흑자 누계액은 2622억 달러로 전년대비 847억 달러가 늘어난 47.7%의 증가를 보였다.

## 제 4 절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 1.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한 제한 완화

중국의 무역규모는 2003년에 8,5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순위가 11위에서 4위로 급상승하는 등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를 고려할 때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기존의 대외무역법으로는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WTO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다. 동 법은 2004년 4월 6일 ‘제 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개인도 수출입업무를 수행한 무역업자가 될 수 있음

개정 이전에는 중국의 자연인은 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자가(對外貿易經營者) 될 수 없었다.<sup>48)</sup> 이번 조치로 일반 개인의 무역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략비축물자(戰略儲蓄物資)의 교역을 부분적으로 일반 무역업자에게도 허용했음.

석유, 곡물, 비료, 면화, 설탕 등과 같은 전략비축물자의 수입은 그 동안 국유기업에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일반 기업도 수입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전략비축물자의

<sup>48)</sup> 대외무역경영자란 공상등록 등 수속을 마친 이후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대외무역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을 의미한다.



일정 비율에 대하여는 비허가업체도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WTO 가입시 약속했던 수출입 대상품목의 전면적 개방을 이행하게 되어 상기 품목의 교역증대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적재산권(知識產權)보호 조항의 신설

재정법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기존 수입품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대외무역 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조약과 협정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복제품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국가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EU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중국은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통해 중국이 자유무역, 공정무역을 표방하는 국가이며 WTO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분쟁상대국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지속되는 무역장벽 논란을 감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2. 관세 정책

일반적으로 WTO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회원국이 원할 경우 관세협상을 하고 협상의 성과를 양허표에 기입하여 WTO 협정상의 약속으로 해야 한다. 중국도 가입 협상 과정에서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대폭으로 인하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과 EU와의 양국간 협상에서도 다시 관세를 인하한다고 약속했다.<sup>49)</sup> 미국과의 협의에 따르면 광공업품 관세율은 1997년 평균 24.6%에서 2005년에는 평균 9.4%로 인하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2004년 1월까지 17%로 내리기로 했다. 예컨대 컴퓨터 통신기기 인터넷 관련 기기에 대해서는 평균 13.3%에서 2005년에는 0%로, 자동차는 현행 100% 내지 80%를 2006년 7월까지 25%로, 자동차 부품은 2006년까지 평균 10%로, 종이제품은 현행 15~25%에서 5~7.5%로, 임산물은 현행 12~18%에서 5~7.5%로 각각 인하한다. EU와의 합의에서는 미국과의 합의를 기본으로 주류, 주요 화장품, 섬유, 주요 기계 설비 52개 품목 등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약속했다.<sup>50)</sup>

49) 미국과는 1999년 11월, EU와는 2000년 5월에 양국간 협상을 했다.

1997년 9월 일본과의 합의에서 일본이 요구한 3,634개 품목에 대해 평균 관세율(단수 평균)을 47%(92년 기준)에서 18%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미 1998년 4월 WP에서 공업품 5,699개 품목에 대해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단순평균으로 10.8%, 가중평균으로 6.6%로 한다는 line by line의 제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가중평균으로 6.6%는 선진국과 같은 정도이기 때문에 개도국으로서는 충분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은 WTO 가입시 약속한 관세인하를 대체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관세제도에 관한 기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sup>51)</sup>>이다. 관세제도와 정책의 총괄기관은 국무원이며, 관세율조정과 같은 업무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관세세칙(關稅稅則)위원회가 맡고 있다. 관세세칙의 수정은 관세세칙위원회가 임의로 할 수 없다. 중국 국무원의 생산부문과 수요부문 또는 대외무역부문이 관세세칙 수정안을 제출하면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후에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국내생산부문에서 국산품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관세세칙위원회는 그에 관한 조사·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입증되면 국무원에 그것을 제출하여 해당 수입품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 3. 대외무역경영권

중국의 대외무역권은 WTO 협정과 배치된다고 계속 지적되어 중국은 WTO 가입시 약속 사항으로 가입 후 3년 이내에 외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중국 내 기업에 대하여 무역권 취득을 인정키로 하였다.<sup>52)</sup> 이에 먼저 가입 즉시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한 무역권의 취득 또는 유지의 기준이 되고 있는 수출실적, 무역균형, 외환수지균형 등의 요건을 철폐하기로 하였다. 내자 100% 기업에 대한 무역권 취득에 있어서도 최저 등록자본 요건을 1년째는 500만 위안, 2년째는 300만 위안, 3년째는 100만 위안으로 인하하고 또한 경과 기간 종료 시에는 심사·승인 제도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외자 기업의 경

50) 주류는 65%에서 10%로, 주요 화장품은 30%에서 10%로, 섬유는 EU와 같은 수준으로, 주요 기계 설비는 35%에서 5~10%로 각각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51) 國務院,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關稅條例> (2003.11.23 공포, 2004.1.1 시행).

52) 단, 국가무역품목으로서 일부 예외 품목을 두었는데 곡물, 식용유, 면, 설탕, 담배, 원유, 정유 화학비료가 그 대상이다.

우, 가입 1년 후에 외국자본이 소수지분인 합자기업에 대하여 완전한 무역권을 부여하며, 가입 2년 후에는 외국자본이 다수지분(51% 이상)인 합자기업에 대해 완전한 무역권을 부여, 최종적으로 3년 이내에 중국 내 모든 기업에 대해 무역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WTO 가입이 확실시 된 2001년 7월 20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경영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공표하였다. 즉, 생산형 외자기업의 수출경영권<sup>53)</sup>, 모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투자성 회사의 수입경영권, 연구개발센터의 테스트용 하이테크 제품 수입경영권 등 3개 부문의 무역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1년 7월 시행의 수출입경영자격관리규정을 발표하여 자본금 500만 위안 이상(중서부 지역은 300만 위안 이상)의 기업에 대해 무역권을 부여하여 무역권을 부여받은 기업은 자사가 생산한 제품, 원부자재, 기계설비 수출입 업무와 기타 제품의 수출입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WTO 가입시 체결한 협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중국은 수출입 관련 허가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대외무역법》 제9조에서는 대외무역업자는 법에 따라 등기를 한 후 화물수출입 및 기술수출입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업자의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상무부가 2004년 6월 19일 반포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실행하기 시작한 “대외무역업자 등기규칙”에 의하면 화물수출입 또는 기술 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또는 상무부가 위임한 기관<sup>54)</sup>에 등기 등록하여야 한다. 상무부가 위임한 기관은 해당 지역의 대외무역업 관련 등기 등록의 수속업무를 담당할 책임이 있으며, 수입 기관은 관련 업무를 기타 조직에게 임의로 재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외무역업을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상무부가 발행한 ‘대외무역업자등록등기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는데 이들 기입내용은 무역업자의 명칭, 주로, 무역업 장소, 상공등기일자 및 상공등기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후 관할 등기기관에 제출하면 5일 이내에 등기수속절차가 완료된다. 등기수

53) 연간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 등의 조건 하에서 할당허가증의 대상이 아닌 상품이나 자사제품 이외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54) 상무부가 등기 및 등록을 위하여 위임한 기관은 중국의 주요 행정도시의 행정기관 및 위원회이며, 이들 기관은 모두 48개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 상무부의 홈페이지([www.mofcom.gov.cn](http://www.mofcom.gov.cn))에 게시된 “대외무역경영자 비안등기방법”에 관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속이 완료된 관련 서류를 30일 이내에 세관, 검사 검역소, 외환, 세무 등의 부서에 대외무역업무수속에 필요한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 등록한 내용에 변경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만일 이들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등기 등록한 서류는 그 효력이 자동 상실한다.

#### 4. 수입관리제도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수입상품 관리 제도를 대폭 수정하였다. 자동등록제는 수입자유화 품목에 대한 자동수입허가관리제로 바뀌었고 국가관리 수입품은 점진적 수입개방을 전제로 조정되고 있다. 관세쿼터제가 도입되고, 국가관리 수입품은 국영무역상품과 지정경영상품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자동 수입허가 관리제

자동수입허가는 중요한 상품의 수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허가증 발급 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에 의거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투자총액 범위내의 설비 수입과 원재료 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허가증 발급기관은 “자동수입허가증 발급기구목록” (2001년 12월 공포), “외자기업 자동수입허가증 발급기관목록” (2002년 2월 공포)이 공표되었다. 지방정부와 각 부문의 기전상품수출입 사무실이 발급하는 것이 55 품목, 상무부가 발급하는 것이 55 품목이며, 중고기전제품 11품목은 상무부가 발급한다.

수입제한을 받지 않지만 수입 검사해야 할 제품에게 자동수입허가를 실시한다. 2004년까지의 수입입찰제품은 수입허가목록에서 등록되었다. 단기간 내에 많은 비관세조치가 취소되기 때문에 수입자동허가체제는 관련 제품의 무역을 검사하여 큰 폭의 변동이 없도록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 이 제품들이 대한 검사는 무역이 국내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완전 또는 부분적 자동수입허가 적용된 관세코드의 수량은 2002년의 1,191개(관세의 16.28%)부터 2005년의 1,205개(관세의 16%)로 증가하였다. 자동수입허가에 적용된 제품은 주로 싼 금속과 그의 제품(HS제 15부분), 교통설비(제 17부분), 기계(제 16부분), 플라스틱 고무(제 7부분), 방직품(제

11부분)과 정밀기기(제 18부분)이다.

2007년 5월 20일에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07년 자동수입허가증 목록조정 공고”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07년 43호)를 발표, 오는 6월 1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상무부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에는 테레프탈산, 천연가스, 알루미늄(산화알루미늄과 페알루미늄 불포함) 등 32개 제품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가 취소되었다.<sup>55)</sup>

## 나. 국영무역 및 지정경영상품관리제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국영무역관리는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이 두 기관은 국영무역관리 대상의 수입상품 목록과 그 상품들을 수입할 국영무역기업을 결정하여 공포한다. 국영무역관리 상품의 수입은 당연히 국영무역기업에게 맡겨지지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 비국영무역기업의 수입이 허용된다. 국영무역 관리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반기마다 수입상품의 구매가격, 판매가격 등을 주무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WTO 가입 당시 중국은 지정경영 품목으로 천연고무, 강재, 목재합판 등 6개 품목으로 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국영무역기업의 수입품 구입절차는 WTO 협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중국정부는 수량, 가격에 대해서 국영무역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비료 및 석유에 관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정무역에 대해서도 가입 후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것과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지정기업의 자격은 “화물수입지정경영관리규칙” (2002년 1월 1일 시행)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상품목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상품으로 국제시장에서 독점력이 강하고 가격변동이 큰 일부 원재료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정무역기업에게만 수입을 허용한다.

또한 외자 기업의 자사 생산용, 가공무역방식, 수출가공구와 보세구의 수입은 지정기업의 규정에 구속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sup>55)</sup> KORTA자료. <http://www.kotra.or.kr/wps/myportal/dk.2007.5.25>

## 다. 수입제한 상품관리제

중국의 수입제한조건은 《대외무역법》과 <화물수출입관리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제한조건은 ①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을 위해 ② 황금 또는 백은 ③ 사람 또는 동식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④ 어떤 형식으로든 농업, 목축업, 어업 생산품에 대한 필요성으로 ⑤ 국내 특정산업의 설립이나 설립의 가속화를 위해 ⑥ 국제금융지위의 보장과 국제수지균형을 위해 ⑦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해 ⑧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과 협정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이다.<sup>56)</sup>

<화물수출입관리 조례>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임시조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57)</sup>

① 국제수지균형이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깨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럴 위험이 있거나 경제발전계획의 실시에 적합한 외환보유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수입품 가격 또는 수량에 대해 임시적인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고, ② 국내 특정산업의 설립과 설립의 가속화를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수입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취하며, 농산물에 대한 임시 수입제한조치는 (a) 중국 내 생산이나 판매를 제한하는 동종 또는 직접 경쟁수입품 (b) 보조금 형식으로 소비를 시켜야 할 중국 내 과잉생산품과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수입품 (c) 전부 또는 대부분 수입 농수산물로 이루어진 동물제품에 취해진다.

## 라. 수입상품관세쿼터관리제

관세쿼터관리제란 정부가 관리대상 수입품에 대해서 일정한 쿼터량을 정해두고 그 쿼터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쿼터량을 초과하는 수량부터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비관세장벽을 부분적으로 관세화하는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제도이지만 중국은 WTO 가입 후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다른 쿼터관리제와 마찬가지로 관세쿼터관리제 역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 그

56)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2004.4.15 수정) 제16조 제 1~3항 및 제 7항~11항. 이 조항들은 국제서비스무역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법제 26조 제 1~6항 참조.

57) 《貨物進出口管理條例》 제 54조~56조.

일정은 먼저 매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상무부의 수입쿼터관리부서가 다음 해의 관세쿼터총량을 발표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발표에 따라 기업들은 그 해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세쿼터를 신청한다. 신청기업에 대한 관세쿼터의 허용여부는 12월 31일 이전에 결정된다. 전년도에 관세쿼터를 받은 기업은 금년도 말까지 쿼터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사용 쿼터를 9월 15일 이전에 수입쿼터 관리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쿼터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도 않은 경우에 그 기업의 다음번 쿼터는 그만큼 차감될 수 있다. 관세쿼터관리제의 운영은 다른 쿼터관리제와 별 차이가 없다.

## 5. 수출관리제도

중국은 국가규정으로 수출수량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쿼터(出口配額) 관리를 하고 그 밖의 수출제한 상품은 수출허가증관리를 한다.<sup>58)</sup> 수출쿼터관리는 개별적 상품의 수출량을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고, 수출허가증관리는 수출허가의 유효성을 규제하는 것이다. 수출쿼터관리나 수출허가증관리 대상품목은 모두 허가증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다.

### 가. 수출상품쿼터관리제도

수출상품쿼터관리는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sup>59)</sup>에 따라 상무부가 매년 10월 31일 전에 다음해의 수출쿼터총량을 공포하는 데서 시작된다. 만일 수출쿼터총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조정을 완료하여 공포하게 된다.

수출경영의 허가를 받았거나 자격을 가지고 최근 3년간 경제활동에서 위법사실이 없는 기업은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다음해의 수출쿼터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관리 기업은 직접 상무부에 신청하고, 지방관리 기업은 그 지방의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 위원회) 또는 상무국(청)에 신청한다. 지방의 신청접수 기관은 기업의 신청내용을 심사·총괄한 후에 상무부에 보고한다.

58) 國務院 《中華人民共和國 貨物進出口管理條例》 (2001.12.10 공포, 2002.1.1 시행) 제36조.

59) 《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2001.12.20 공포, 2002.1.1 시행).



## 나. 수출상품쿼터 입찰제도

중국의 현행 수출상품쿼터입찰은 법적으로 WTO 가입 이후에 제정된 《수출상품쿼터 입찰방법》<sup>60)</sup>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법은 농산물, 방직품 피동쿼터 등에 대한 시행 세칙을 두고 있다.

현재는 수출쿼터입찰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품목을 제외한 각종 무역방식, 즉 일반무역 진료가공 내료가공 바터무역 국경무역 보상무역 등으로 거래되는 수출상품과 청부공정 및 노무수출에 동반되는 상품까지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수출쿼터 입찰대상은 다양화되기는 하였으나 쿼터입찰상품으로 확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성격을 갖는 상품에 국한된다.

- ① 재생이 불가능한 주요 자원의 성격을 갖는 상품.
- ②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고 수출의 가격탄력도가 비교적 작은 상품.
- ③ 공급이 수요보다 크고 경영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저가 판매경쟁이 용이하여 해외에서 반덤핑제소 가능성이 큰 상품.
- ④ 중국과 쌍무 또는 가각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수출쿼터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다.

그리고 수출상품쿼터 입찰방식으로는 공개입찰과 협의입찰 두 가지가 채용되고 있다.<sup>61)</sup> 위의 ②와 ③의 상품들은 대개 공개입찰대상이 되고, ①와 ④의 상품들은 협의입찰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다.

## 다. 수출허가증관리

수출허가증관리는 중국의 수출관리에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중국의 현행 ‘수출허가증 관리규정’은 수출제한조건 중 어느 한 조건에만 해당하더라도 국가는 수출쿼터허가증 또는 수출허가증관리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출제한조건이란 ① 국가안 전이나 사회공공이익을 위해, ②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자원 보호를 위해, ③ 어떤 형식으로든 농업, 목축업, 어업 생산품에 대한 필요성으로,

60) 《出口商品配額招標辦法》(2001.12.20 공포, 2002.1.1 시행).

61) 과거에는 ‘초청입찰’과 ‘지정입찰’도 있었으나 새 방법에서는 폐지되었다.

④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과 협정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수출허가증은 한 세관에서 한 허가증만을 사용하게 하거나 유효기간 안에 허가증을 한번만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된다. 중국에서 앞의 것은 일관일증(一關一證)제라 하고, 뒤의 것은 일비일증(一批一證)제라고 한다. 중국의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보상무역의 수출허가증관리상품에 대해서 일비일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보상무역의 수출허가증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최대 12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출허가증관리상품목록>에 일비일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일비일증(非一批一證)으로 표기되어 있는 상품도 마찬가지이다.

## 제 5 절 WTO 가입 이후 외자도입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기업들 간의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우대정책의 대표적인 조세감면 등의 조치를 개정하고 있으며,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산업정책도 조정되고 있다. 자본유치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 및 현대화된 경영관리 및 우수한 인력유치를 중요시 할 것이며, 일반가공업 위주에서 하이테크,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유치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 1. 10.5 계획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와서 10.5 계획의 실시와 WTO에의 가입 등 많은 국내외경제형세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하여 새로운 요구를 강요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4월1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약칭 목록)과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약칭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된 목록과 규정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주도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새로운 변화내용 다음과 같다.

① 장려류 목록을 증가하기도 하고, 제한류 목록을 감소하였으며, 외국인투자의 지분제한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이전에 제한했던 통신, 가스, 배수 등 도시관도망을 외국기업에게 처음으로 개방했다.

② 은행,<sup>62)</sup> 보험,<sup>63)</sup> 상업, 무역, 여행, 통신, 운송, 항공업, 회계, 법률, 외환 등

서비스 분야는 WTO의 승낙의 지역, 수량, 경영범위, 지분요구와 시간표에 의하여 WTO의 약속을 실행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였다. WTO가입 이후 2-3년내 외국기업의 지분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5-6년내 업무범위와 지역제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③ 외국기업의 대 서부우위산업 투자를 장려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의 도입 활용.

첫째, 기본적으로 ‘중서부지구 외자도입 우선산업 목록’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외자기업의 설비, 기술, 부품, 비품 수입 시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관세 및 부과세를 면제해 주며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10년간 기업소득세의 15%를 감세 해주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시켜주고, 교통, 전력, 등의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및 3년간 동소득세의 50%를 감세 해 주고 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부지역의 농업수리, 생태, 교통에너지, 시정(市政), 환경보호, 관광 등 기초 인프라시설과 자원개발 및 기술연구센터 건립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영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동부지역에서 조차 진출의 제한을 받아온 유통업과 은행의 인민폐 업무 등도 개방하고 보험, 관광업 분야와 합작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대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중국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부지역에 25% 이상을 재투자 할 경우 외자기업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며 BOT 및 TOT 방식의 외자이용을 화력·수력발전소, 고속도로, 교량 및 터널, 지방철도, 도시용수 공급과 정수장, 폐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부지역에 기초인프라 투자 시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 주식비율 제한을 완화하며 연해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부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 대한 위탁경영관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2) 2002년7월18일 중국인민은행은 「외국금융기구의 중국내 대표기구설립에 대한 관리지침」을 공포·실시했다.

63) 2002년2월1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인민공화국 외국보험회사 관리조례」를 공포하였다. 이 조례에 의하여 외국보험회사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중국에서 중외합작보험회사·외국독자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 지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 2. 11.5 계획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중국은 11.5 계획에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06.11월 11.5 외자이용 계획을 발표, 외국인투자유치의 포커스를 “量”에서 “質”로 “자금”에서 “기술과 노하우”로 전환하고 있다.<sup>64)</sup> 금번 수정 발표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투자를 무분별하게 유치하던 데서 벗어나 선별적으로 유치하려는 방침을 재확인시켜 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향후 선별적 외자유치를 통해 중국에 도움이 되는 산업은 적극 장려하는 한편 부정적 산업은 투자유치를 제한할 방침이다.

중국은 2006년 11월 7일 새로운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을 발표하고 2007.1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새로 발표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장려업종 대폭 확대, 제한 및 금지업종 소폭 감소
- △ 新기술 적극 유치, 舊기술 우대혜택 축소
- △ 단순 수출에 대한 우대혜택 취소
- △ 부동산업, 외국인 투자 제한
- △ WTO 가입 6년차, 서비스 시장 진입제한 완화
- △ 금융업, 제한적 개방 확대
- △ 비즈니스 서비스업 적극 육성
- △ 철도교통 운수 보수분야 장려업종 추가
- △ 송전망 발전소 건설 경영 분야 진출제한 완화
- △ 일부 희귀자원 및 재생 불가능 광산자원 투자 제한

## 3. 외국인 투자 상황

2002년에는 FDI가 527달러가 되어 중국 역사상 최고의 유입액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FDI유치 1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FDI 유입액이 약535억 달러로서 실

64) 한국무역협회 자료. <http://www.kita.net> 2006.11

행액 기준으로 독자기업형태의 외자유치가 333.8억 달러(총유치액의 62.4%)이고 합자 기업형태는 153.9억 달러(총유치액의 28.8%)였다. 2004년에는 606억 달러로서 전년대 비 13.3% 증가하여 전 세계 1위의 투자유치국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2006년 인허가되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41,485개, 실제 사용된 외자 금액은 694.68억 달러로 동기대비 5.76%, 4.06% 각각 하락하였다. 이중, 금융분야(은행, 보험, 증권)에서 새로 설립된 중외합자은행, 보험회사, 기금관리회사는 12곳, 실제 사용된 외자금액은 64.47억 달러로 동기대비 33.33%, 46.64% 각각 하락하였다.

외국투자산업구조를 놓고 보면 2006년 하이테크노로지분야에 실제 사용된 외자금액은 101.4249억 달러로 동기대비 3.81% 증가하였으며, 특히 통신설비제조업, 광전자부품제조업, 전자계산기제조업에 실제 사용된 외자금액의 증가 폭은 각각 61.40%, 50.97%, 48.63%에 달했다.<sup>65)</sup> 비금융서비스업 분야의 외상투자 성장세도 가속화되었다. 2006년 비금융서비스업에서 실제 사용된 외자금액은 146.92억 달러로 동기대비 25.79% 증가한 것이며, 이는 전국에 유치한 총 외자 금액의 비중이 4%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제조업에 실제 사용된 외자금액은 400.77억 달러로 동기대비 5.6% 하락한 것이며, 차지하는 비중도 6.78% 하락하였다.

외상 투자 지역 분포를 놓고 보면, 2006년 동부지역에 실제 사용된 외자 569.22억 달러로 전국 총액의 90.32%, 중부지역에 실제 사용된 외자는 39.22억 달러로 전국 총액의 6.22%. 서부지역에 실제 사용된 외자금액은 21.77억 달러로 전국 총액의 3.45%를 차지했다. 동북지역의 전통공업기지에 실제 사용된 외자액은 24.66억 달러로 전국 총액의 3.91%를 차지했다.

2007년 중국이 끌어 들인 외상직접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국에 새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수는 총 37,888 곳으로 동기대비 8.69% 하락세를 보인 반면, 실제 사용외자금액은 826억 5800만 달러로 동기대비 13.8%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전국 비금융 분야에 신설된 외상투자기업도 37,871 곳으로 동기대비 8.69% 하락한 반면, 실제 사용외자금액은 747억 6800만 달러로 동기대비 13.59% 증가를 보였다.

실제 사용 외자의 증가가 비교적 빠른 한 해였다. 금년 1월-11월까지 중국이 비준한 외상투자기업은 34,419곳으로 동기대비 7.02% 하락한 반면, 실제 사용 외자액은 616.74억 달러로 동기대비 13.66% 증가를 보여, 올 한 해는 최근 3년 중 비교적 빠른

65)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자료. <http://www.nofcom.gov.cn> 2007.03.26

증가세를 보인 한 해가 되었다.

외자 유치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었다. 금년 농업분야에 비준된 외상투자 항목은 913개로 동기대비 10.94%, 실제 사용 외자액은 6억 4백만 달러로 동기대비 18.67% 증가를 보였다.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유치한 외자는 262억 6백만 달러로 동기대비 58.42%라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제조업 분야는 327억 7천만 달러를 유치하는데 그쳐 동기대비 5.42% 하락했다.

외자 유치 지역이 다소 개선되었다. 금년 11개월 동안 중부지역이 유치한 외자는 동기대비 31.12%, 서부지역이 유치한 외자는 61.66%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는 10.77% 증가한 동부지역에 비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이로써 외자 유치 지역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제 6 절 WTO 가입후 환율제도 변화

근년에 중국은 경상항목과 자본항목은 흑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다. 2003년에 중국공산당 제 16차 3중 전회에서 “인민폐 환율 형성원리를 보완시키고 인민폐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 안정을 시킨다.” 라는 제안을 내었다. 2005년 6월말에 중국 외환 보유고는 7110억 달러였다. 2005년에 들어와서 대외무역 흑자가 신속히 증가함에 따라 무역마찰이 더욱 격화해진다.

근년에 국무원의 지도에 인민폐 환율 형성 원리 개혁의 준비 조치가 차츰 완비되었다.

첫째로 국유상업은행의 개편에 중요한 성과를 얻었고, 농촌신용사의 시험적인 개혁은 순조롭게 전개되었고, 증권회사의 위험 조처 사업은 온건하게 추진되고 있고, 금융기구는 환율 위험을 조처하는 능력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둘째로 금융 시장은 깊이 발전되었다. 인민폐화폐시장, 증권시장,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건설에 장족의 진보를 이루었다. 외환시장 거래 품목은 꾸준히 풍부해지고.

셋째로 불필요한 외환 관제를 감소시키고 자본항목 및 개인이나 기업 경상항목 거래에 대한 관제를 한층 더 완화 시킨다. 선물환 거래는 기업이 환율 위험을 피하는 수단이 되고 차츰 보급되고 있다.

2005년 7월 21일에 인민폐 환율 형성 원리를 보완 시키는 개혁이 등장하였다. 개혁의 내용은 인민폐 환율은 예전처럼 달러를 단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국 대외경제발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주요 화폐 몇 개를 선정하여 각 화폐에게 해당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화폐 바구니 하나를 구성한다.<sup>66)</sup> 동시에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의해서 시장 공급과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화폐 바구니를 참고하면서 인민폐 다각 환율 지수의 변동을 계산해서 인민폐 환율에 대해 관리하고 조절한다. 따라서 인민폐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기준에 안정 시킨다.

중국인민은행은 1994년부터 외환 시장을 건설하는 경험을 총괄하는 기초에 새 환율제도의 운영 특징과 시장 주체의 위험 도피 수요를 결합하여 외환 시장을 발전하는 여러 조치를 연구해 냈다.

첫째로는 시장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 시키고 은행간의 인민폐 선물 시장을 마련하며 더 많은 시장 주체가 은행간의 선물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고 초보적으로 국내시장이 인민폐 선물 환율의 평가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10월31일까지 인민폐 선물 시장의 구성원이 이미 54개에 증가되었다. 은행간 인민폐 선물 시장의 설립에 따라 국경 외 선물환 계약 가격(NDF)은 이율 적정 가격 수준으로의 변동을 가속 시켜서 인민폐의 평가절상 예상을 저하 시켰다.

둘째로는 시장 위험을 도피하는 수단을 강화 시키며 외환 거래와 파생품 거래 자격을 갖춘 은행은 선물환 업무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중국 대외 경제 발전의 수요에 따라 선물 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거래 기한을 놓아 주며 은행 자체가 가격을 정하므로 기업과 거민들에게 전면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환율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로는 외환 관리를 개선시킨다. 국경 내 거민이 사적으로 외환 구입의 제한액을 제고 시키고 구입 절차를 간화 시키며 국경 내 기구가 경상항목 외환 수입을 보유하는 비율을 제고 시켜서 거민과 기업의 외환 수요를 편리하게 한다. 은행이 국경 외로 투자하는 중국 기업에게 용자 담보를 제공하는 관리 방식을 조정하며 기업의 대외

66) 중국인민은행 자료. <http://www.pbc.gov.cn> 2005.08



투자를 격려한다. 외환 공수 관계를 잘 파악하고 국제 수지를 조절하는 시장 체제를 건전하게 수립하여서 국제 수지 평형을 촉진하기 위해서 외환관리 체제의 개혁을 한층 더 심화 시킨다.

넷째로는 은행간 현물 시장의 인민폐 대 비달러 화폐 환율의 변동 폭을 확대 시킨다. 은행 카운터 외환 환율의 관리 방식을 개혁 시키고 인민폐 대 달러의 매매 환율 차이 폭을 확대 시켰으며, 비달러 화폐에 대한 환율 차이 폭 제한을 취소 시킨다.

## 제 7 절 FTA 추진 상황

### 1. FTA 추진 목적

중국 상무부 정책연구실은 2005년 7월 ‘지역경제협력 참여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sup>67)</sup> 동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한 전세계적인 지역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시장개척, 주요 채널확보, 주요 자원·에너지 확보’의 원칙에 따라 전세계적인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별 경제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ASEAN과의 지역경제협력을 가속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경제와의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환경을 마련한다.

둘째, 반드시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중국의 동북3성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력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외개방 환경을 마련한다.

셋째, 중국의 거대한 구매력 우위를 활용하여 러시아, 호주, 아프리카, 남미, 중동아시아, 중앙아시아지역 등과의 협력파트너관계 및 지역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심화시킨다. 이는 중국에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자원·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중국제품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의미한다.

67)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자료. <http://www.mofcom.gov.cn> 2005.07

넷째,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 개도국들과의 양자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채널과 가교 역할을 구축한다.

다섯째, 미국시장과 유럽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품과 특정 분야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개별국가와의 FTA를 시작으로 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법과 그 경험을 터득할 수 있다.

여섯째, 유럽과 일부 개도국이 체결한 로메협정(Lome Convention)의 방식을 참고하여 최빈개도국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대해 일방적으로 1차산품에 대한 특혜 관세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역할을 하게 되며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정부는 밝히고 있다.

## 2. FTA 추진 상황

### 가. 칠레와 FTA

2001년 칠레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중-칠레 FTA는 2004년 4월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하여 2004년 10월말에 완료하였다. 동 연구결과에 따라 2004년 11월 18일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 11월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다.

2006년 9월 칠레를 방문한 기간에 중국 전인대 우방귀 위원장과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중국-칠레 FTA를 실시한다고 공동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서비스 무역과 투자 협상을 시작하였다.

중국-칠레 FTA 실시 과정이 시작된 후, 양측은 관세 감면과 비관세장벽을 통해 양국 비교 우위 제품을 상대방에 수출하는 것을 한층 더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여 양국 기업에게는 대량의 비즈니스 기회를, 소비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가지다 주고 있다. 2006년 10월 1일과 2007년 1월 1일, 중국은 잇달아 칠레 제품 2806종과 1947종의 관세를 취소하였으며, 칠레도 2006년 10월 1일에 중국 제품 5891종류의 관세를 무관세 조치하였다. 양측이 이미 무관세 실시한 제품은 주로 화공품, 방직품과 의류, 농산물, 전자제품, 차량 및 부품, 수산물, 금속제품과 광산품 등이다. 2015년까지

양국 세목 총수 97%의 제품이 모두 무관세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 나. 아세안과 FTA

2004년 11월 서명한 중국-아세안 FTA 2004년 《화물무역협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과 2005년 7월에 전면적으로 관세양허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이 되면 대다수 제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아세안 새 회원국은 5년의 과도기를 거치면 2015년까지 대다수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은 또한 서비스 무역과 투자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7년 1월 14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10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필리핀 세부에서 중-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번에 서명한 《서비스무역협정》은 중국과 아세안간의 각국 서비스 무역 시장 개방을 규정하고 서비스 무역 관련 문제를 규범화하는 것이다. 《협정》은 양측이 중-아세안 FTA 기틀 아래 서비스 무역을 전개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서비스 무역 제 1차 구체적 양허안을 포함한다.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WTO 양허안 기초 위에 건축, 환경, 운송, 체육과 비즈니스 등 5개 서비스 분야의 26개 부문에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시장 개방을 약속하며, 아세안 10개국도 각각 금융, 통신, 교육, 관광, 건축, 의료 등 업종을 중국에 시장 개방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개방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 서비스업의 특징과 구체적인 수요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로 상술한 서비스 영역을 한층 더 개방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대방 국가에 독자 혹은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며 회사 설립 시 지분 제한 등의 내용으로 확대한다.

## 다. 뉴질랜드, 호주와 FTA

중국은 2004년 1월 뉴질랜드와 FTA 추진 의향서를, 그리고 6월 중순에는 기본 협정을 각각 교환하였다. 2004년 5월 공동연구 종료 이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헬렌 킬락 수상의 합의에 따라 2004년 12월 6일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였다.<sup>68)</sup>

한편, 중국과 호주간 FTA는 2003년 중국을 방문한 호주 총리가 중국에 양국간 FTA건설 문제를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어 2003년 10월 양국은 《무역 및 경제에 관한 기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그 후, 중국과 호주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05년 4월 정부간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였다. 호주정부도 정부간 협상의 개시와 동시에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를 승인하였다. 현재 호주는 중국의 9번째 무역상대국이며 중국은 호주의 3대 무역상대국으로서, 특히 중국-호주간의 FTA는 양국간의 무역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중국기업의 대호주 철광석 자원개발에의 참여와 호주의 대중국 농업 및 축산물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17대 전인대 보고 내용 중에는 “FTA 전략 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가 명확히 제시되기도 하였다. 2007년까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에서 새로운 진전을 보였고 중국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의 29개 국가 및 지역(12개의 경제체)과 FTA를 체결하였다. FTA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형식이자 시작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국가들과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앞으로 중국은 적극적인 FTA 협상을 실시하여, 개혁과 발전, 공동 이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68) 뉴질랜드는 중국의 WTO 가입관련 양자간 협상 및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임. 2004.12

## 제 5 장 결론

중국은 8년 항일전과 3년 내전으로 피폐해진 국민경제를 사회주의국가경제건설로 극복하려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53년부터 5개년마다 경제발전 계획을 한번 제정한다. 매5개년의 경제발전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무역정책과 관리제도를 해당 시기의 국제무역환경에 적합하도록 계속 개선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개혁·개방 전후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경제무역정책 및 무역관리제도 변화된 것을 살펴보았다.

신 중국 성립 초기 사회주의 국가였던 구소련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무역체제를 마련하였고 그 것을 기반으로 국가정부주도의 통제경제무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중국과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가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1978년 이후 덩소평 주도의 개혁·개방 경제무역정책을 시작했다. 초기의 남부 일원에 집중된 경제특구 정책을 대련, 천지, 청도, 상해를 포괄하는 연해 전 지역의 14개 경제기술개발구로 연결시키고 나아가던 연해지역 전체를 개발해 나갔다. 개혁·개방정책은 외국인투자 유대정책에 통해서 외국자본기술도입→국내산업 육성→해외경쟁력확보→해외수출확대→국내경제의 활성화의 목표를 실현하였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4 연해개방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창장삼각주지역의 상하이 푸둥신구 개발 및 장자강 국제도시화와 쑤저우 첨단공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시기에는 무역체제와 관리제도는 중국정부의 대외개방추진과 외국인투자자유치로 대외무역을 활성화되자 무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980년대 상반기에 1단계의 사회주의 무역체제의 개혁으로 대외무역경영권한의 분산, 공업부문과 무역의 결합, 외환유보제도 등 일련의 조치를 실행하였다. 80년대 하반기부터 전개되는데 이것이 바로 2단계 사회주의 무역체제 개혁으로 무역경영 손익책임제도의 시행이다. 특히 1994년에는 외환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단일환율제도를 시행하고 무역경영 손익책임제는 폐지함으로써, 대외무역을 급증하고 무역수지도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외환보유가 증가했다.

중국은 WTO 가입 전후 세계 자유무역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법제들을 마련하고 무역에 있어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WTO 가입 이후 WTO 규범에 배치되던 규정들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여 WTO 시대의 중

국무역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규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1994년에 처음 제정된 대외무역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이 2004년에 개정된 신 《대외무역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대외무역법체제의 정비작업을 통해서 중국 전체의 무역관리를 통일성으로 시행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대외적으로 호혜·평등을 천명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무역관리제도는 개정된 신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경영권, 수출입관리제도가 대폭 수정하였다. 종전 자동등록제는 수입자유화 품목에 대한 자동수입허가관리제로 바뀌었고 국가관리 수입품은 점진적 수입개방을 전제로 조정되고 있다. 관세쿼터제가 도입되고, 국가관리 수입품은 국영무역상품과 지정경영상품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수출관리제도의 경우 국가규정으로 수출수량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쿼터(export quota)관리를 하고 그 밖의 수출제한 상품은 수출허가증관리를 한다. 수출쿼터제는 중국의 수출에서 수출물량의 확보와 수출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도구로 쓰여 왔다. 현재, 수출쿼터관리는 수출상품쿼터, 수출상품쿼터입찰 및 방직품의 피동쿼터만 시행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에 정부차관과 국제금융조직차관 등 도입되었고 전면 개혁·개방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경제특구에서 관세, 소득세 및 수출입 허가증 감면 등 유대정책을 실시했다. 1986년 외국인 단독투자기업의 기본법인 《외자기업법》이 공포되고 1988년에는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공포되어 3자기업체제가 마련되었다. 이제까지 외자이용의 질 제고로 전환하고 있다. 즉, 외자이용을 통해 외국의 선진기술, 관리경험, 인재 도입등 주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정부는 1981년부터 이중고정환율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무역 급증에 따른 외환거래의 증가는 새로운 시장 조절환율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중고정환율제도는 1994년 1월 1일부터 단일관리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폐지되었다. WTO 가입 후, 중국 무역흑자 급증에 의해 외환보유액 신속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 대 미국과 EU의 흑자액에 급증에 따라 국제 무역마찰 심화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04년 10월 미국정부에 대하여 점진적인 변동환율제 전환을 약속한데 이어 2005년부터 인민폐 평가절상이 시작하였다. 특히 지난해 중국정부의 거시적 경제조정과 나라간의 수지균형 및 시장경제의 작용으로 인민폐가 급속히 평가 절상되었으며 인민폐와 달러의 환율이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고 한다. 인민폐 평가절상의 시기가 성숙되면서 2008년에 들어, 인민폐의 환율이 더욱 넓은 범위에서 파동하고 본격적인 가속화 평가절상이 시작

될 것으로 전망이다.

2007년 중국 공산당의 17대 보고 내용 중에는 “FTA 전략 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가 명확히 제시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의 29개 국가 및 지역(12개의 경제체)과 FTA를 체결하였고, 2006년 대외무역총액 가운데 1/4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FTA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형식이자 시작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국가들과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앞으로 중국은 적극적인 FTA 협상을 실시하여, 개혁과 발전, 공동 이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익수, 『중국투자론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9.
-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정책원리의 흐름과 운용메커니즘』, 나남출판, 2004.
- 이재기, 『현대중국경제론』, 청목출판사, 2005.
- 이재유·허흥호,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망』, 국제무역경영 연구원, 2003.
- 채훈, 『최신 중국무역 현장가이드』, 화신문화(주), 2003.
- 최성일, 『중국이 WTO를 만났다?』, 신지서원, 2002.
- 홍인기, 『최근 중국경제와 세계화·정보화』, 박영사, 2004.
- \_\_\_\_\_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1998, 2000.
- 黃靜波, 『中國對外貿易政策改革』, 廣東人民出版社, 2003.
- 苏灼基 编著, 강준영 옮김, 『中国经济概论』, 지영사, 1995.
- 余永定, 鄭秉文, 『中國入世研究報告: 進入WTO的中國產業』,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1.

### 학위논문

- 김중수,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과 체계- 정책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 박정옥,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FTA 추진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6.
- 정소, “WTO가입 이후 중국 무역관리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
- 최영리, “중국 환율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

학술지 간행물

- 강효백, “WTO무역관련 투자 조치 협정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2004.
- 김동, “중국대외무역구성발전추세에 관한 사고”,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1991.
- 김봉덕, “중국의 국가 정황에 대한 재인식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중·한 경제와 무역 관계”,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2006.
- 김용선, “개혁 이후 중국 대외 무역 발전의 추이와 전망”, 『중국학논업』 제 11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01.
- 김용선, “중국의 무역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중국학논업』 제6집, 한국중국문화학회, 1997.
- 김윤·오환중, “중국 위안화 환율변동이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문 경영인연구』 한국전문경영인학회, 1998.
- 김종현,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대외무역정책의 경향”, 『중국학연구』, 중국학연구회, 2003.
- 김창곤, 박진근, “중국의 WTO 가입 후 통상정책에 대한 고찰-무역구제조치를 위한의 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해양 정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 김한수, 『국제화시대의 국제금융상식』, 국제금융연구원, 1994.
- 남수중, “중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 변화와 투자 리스크 평가-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를 중심으로-”, 『2003년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변화하는 중국과 한·중 관계의 재조명』, 현대중국학회, 2003.
- 문정구,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관한연구”, 『중국연구』,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96.
- 남종호, “중국대외경제무역정책의 변천”, 『중국연구』 21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1998.
- 오용석, “중국의 대외무역과 한·중 수출경쟁”, 『정책연구』 93-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윤기관, “중국의 WTO가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전략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 중국투자 촉진 방안”,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2003.
- 이남구,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현황”, 『중국연구』,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91.
- 이원복, 서재일,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분석-등소평 시기의 경제”, 『경제 경영 연구』 제2집 제1호, 2003.
- 전재욱·박상수,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주대기, 오일환 역, “중국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조세 특례 제도”, 『조세법연구』, 한국세법학회, 2007.
- 최수웅,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최원익,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국제지역 연구』, 국제지역학회, 2005.
- 황재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변화와 대응전략”,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6.
- 蔭公強, “中國的對外貿易發展模式及其經營管理模式”, 『共黨問題研究』, 第22卷 第1期, 1991.
- 石廣生, “我國對外經濟貿易二十年”, 國際商報(京), 1998.12.18.
- 王子先, “世貿組織與中國進出口體制改革”, 『國際貿易問題』, 1997年 第2期, 1997.
- 魏廷华, 『外向型经济之路』, 广东旅遊出版社, 1993.

#### 웹사이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 i.org>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무 역 학 과	학 번	20067704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손지군	한문 孙志军	영문 Sun Zhi Jun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21-59				
연락처	E-mail : szjycb2004@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중국 경제·무역 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change of Economic and trade Policy in Chin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o ) 반대( )

2009 년 2 월 일

저작자: 손지군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